

■ 2014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4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재활치료1팀	
◦ 14-01 아이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성 발달	6
◦ 14-03 아이와 함께하는 미술놀이	11
◦ 14-04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체간의 운동 조절 방법	20
2. 재활치료2팀	
◦ 14-05 언어표현훈련	38
◦ 14-06 장애인 뉴스포츠	50
◦ 14-07 아동의 상호작용 하는 방법과 장애 영역별 학습특성	60
3. 사회심리재활팀	
◦ 14-08 음악치료기법을 활용한 장애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65
4. 직업재활팀	
◦ 14-09 노무교육(자녀의 취업상황에 대한 Q&A)	74
◦ 14-10 사회초년생 중심 개인재무설계	79
5. 열린일터	
◦ 14-11 2014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87
◦ 14-12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 이해하기	105
6.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14-13 2014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108
◦ 14-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3
◦ 14-1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지원방안	132

아이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성 발달



팀 명	재활치료 1팀
일 시	2014년 3월 3일 ~ 2014년 3월 28일
장 소	놀이치료실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아이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성 발달>

1. 자아존중감이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반영하여 가지게 되는 인식을 말한다.

유아는 4세까지의 자신의 능력과 가치, 행동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하여 5세경 자기상을 형성하고 5-8세 사이에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자기가치감

- 자기가치감이란 자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자기 자체로 충분히 가치있다고 느끼는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2)유능감

- 유능감이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3)자신에 대한 호감

- 자신에 대한 호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2. 사회성이란?

유아기(만3세~6세)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사회적 접촉을 어떻게 하고 또래들과 어떻게 어울려야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 3세는 자신의 성별에 대해 알게되고 같이 앉아있어도 따로 놀이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 4세는 이성보다 동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역할놀이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친구와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 5세는 규칙을 정해서 놀이를 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서 공격적 행동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가장 큰 특성으로는 다른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물건에 손을 못대게 하며 반항적이고 힘에 대한 욕구가 상승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아존중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욕구의 좌절 및 비난 경험이 많은 아이는 자신

의 성공보다 실패 및 좌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사회성 발달을 위한 자존감의 건강한 발달이 중요한 것이다.

4. 가정에서 사회성향상을 위한 전략

그렇다면 자존감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사회성의 발달을 위하여 가정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1) 엄마의 역할

아이와 엄마는 정서적 친밀감을 가진 관계이며 아이의 첫 번째 사회적 관계자이기도 하다. 또한 아이가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의 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① 반복되는 성공경험 제공해주기

- 우선 아동에게 성공적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옷 입기, 밥상에 수저올리기, 스스로 옷 골라입기)등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다.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해보게 유도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② 부정적 평가보다 긍정적 평가해주기

- 아이가 못한 것 보다 잘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격려해주는 것으로 격려의 힘으로 다른 것을 도전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③ 아이의 이야기 경청해주기

-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잘 듣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2) 아빠의 역할

엄마와는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 아빠는 외부와의 교류를 감당해주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아빠가 엄마와 의논하고 협력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외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① 몸으로 놀아주기

- 에너지는 넘치지만 정서적, 행동적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공격성에 대해 외적인 통제를 해주어 아이가 자기 조절감을 배우고 행동조절을 배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② 신체로 표현되는 아이의 마음 알아차리기

-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며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아이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③ 아이가 싫어하면 멈추기

- 아이들이 싫다는 장난을 계속해서 아이들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

다. 오히려 아이들이 싫어하면 바로 멈추어야 아이들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기

-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를 함께 해주는 것이 아이의 자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⑤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가르치기

-아이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화내거나 혼내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가르쳐 자기조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형제의 역할

형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이에게 애정대상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갈등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울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바른 갈등의 해결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고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① 형제를 너무 어린취급이나 애 취급하지 않기

- 보통 큰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큰 아이를 대하듯이 둘째는 너무 어린아이 대하듯이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집에서의 역할처럼 언니역할, 동생역할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갈등을 형성할 수 있다.

② 형제자매의 다른 기질을 고려하고 존중하기

- 한 아이는 예민한 기질이고 한 아이는 서두르는 기질이라면 서로 비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명은 피아노를 잘 치고 한 명은 운동을 잘한다면 서로 다른 활동을 시켜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아이들이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 만들어주기

- 보통 빠르고 활발한 아이는 차분한 아이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한 명은 항상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 된다. 이럴 때는 서로간의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장해서 알도록 해야 한다.

④ 작은 다툼은 스스로 해결해보도록 하기

- 아이들간의 갈등은 작은 사회생활로 볼 수 있다. 물론 큰 다툼이라면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다툼이라면 해결될 것을 믿고 둘이 해결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⑤ 외동의 경우는 친구와 만나는 기회 만들어주기

- 외동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을 만나게하여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5. 또래와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전략

1) 아이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

– 평소 가정에서의 행동이나 친구를 대할 때의 행동을 살펴보고 아이가 가진 사회성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2) 단계적인 접근

– 사회성 발달에도 순서가 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기초단계:** 지시 따르기, 인사나누기,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이기, 대화참여하기, 거절하기 등

② **중간단계:** 분노조절하기, 칭찬 받아들이기, 도움요청하기, 대화시작하고 끝내기, 질문하기, 적절한 음성과 표정 만들기, 규칙 지키기, 경청하기, 식사 및 전화예절 지키기

③ **고급단계:** 충동 조절하기, 사회적 상황파악, 협상하기, 실패 견디기, 갈등 해결하기

이 때 놀이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접근한다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3) 친구 사귀는 방법 배우기

–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 순서대로 적용해보는 것이다.

*** 뒷 페이지 참조**

4) 관계 유지의 방법 배우기

– 아이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지속해나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관계유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아이의 특별한 날을 기억해주고 함께 휴가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아이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여주고 비판하지 않으며 아이가 적절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아이의 사회성(2012). 이영애 저.
-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2011). 강서영. 경기대학교
-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유형과 유아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장세라. 한양대학교

아이와 함께하는 미술놀이



팀 명	재활치료1팀
일 시	2014년 9월 22일 ~ 10월 17일
장 소	미술치료실



남동강아임종합복지관

아이와 함께하는 미술놀이

1.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보다 ‘무엇을 느꼈는가’가 더 중요해요.

유아기 창작 활동은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에 있다. 아이와 즐겁게 이야기 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자기 생각과 느낌, 경험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재료

1) 크레파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크레파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다. 혼색이 가능하며 종이, 나무, 천, 사포, 돌, 장판지 등 에도 그릴 수 있다.



2) 수채화 물감

수채화 물감은 채색뿐만 아니라 흘리기, 번지기, 뿌리기 등의 표현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재료이다.



3) 아크릴 물감

아크릴 물감은 발색력이 뛰어나고 접착성이 있어서 수채화 물감으로 칠하기 어려운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우드락에 칠할 수 있다. 건조가 빠르다.



4) 마블링 물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물감이다. 물에 뜬 물감을 종이에 흡수시키는데, 찍을 때마다 전혀 다른 무늬가 찍힌다.



5) 사인펜, 유성매직

사인펜은 선을 그리거나 세밀한 표현을 하기 좋다. 유성매직은 비닐이나 OHP필름, 플라스틱처럼 수성펜을 사용하기 어려운 재료에 사용된다.



6) 스테인글라스 물감

스테인글라스 물감을 다른 물감과 다르게 투명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리병이나 페트병처럼 투명한 재질에 그림을 그리면 색이 투명하게 비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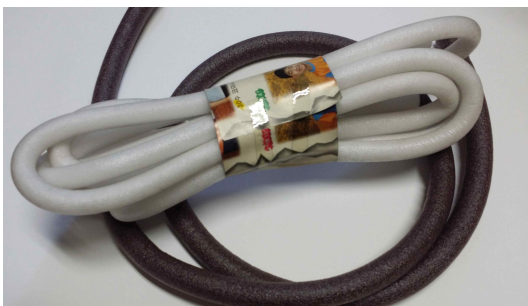
7) 점토

점토는 만지는 대로 형태가 쉽게 변화하여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며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준다. 종류가 다양하며 흙점토, 지점토, 아이클레이, 하비클레이, 천사점토, 유토 등이 있다.



8) 백업

원통형의 기다란 막대 형태로 색과 굵기가 다양하다. 쉽게 구부러지고 부드러워 아이들도 쉽게 자를 수 있다. 어슷하게 자르기, 동그랗게 자르기, 반원으로 자르기 등 자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9) 빵끈

색이 있는 철사로 연필에 감기면 스프링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나비의 더듬이, 로봇의 팔, 우주선의 안테나 등 다양한 표현에 활용된다.



3. 다양한 미술놀이 방법

1) 콜라주

콜라주란 ‘폴로 붙이다’라는 뜻으로 병뚜껑, 색종이, 잡지, 형짚, 실, 곡식, 단추, 빨대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붙이면서 입체적인 효과를 준다.



2) 번지기

젖은 도화지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물감이 마르기 전에 물을 칠하면 자연스럽게 물감이 번지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화선지나 휴지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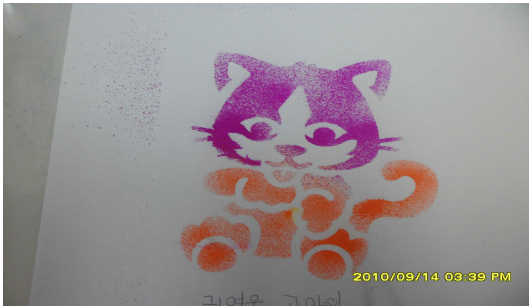
3) 뿌리기

붓이나 나뭇가지에 물감을 묻혀 뿌리는 방법이 있다. 뿌리는 세기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긴다. 물에 적신 도화지 위에 뿌리면 번지면서 퍼지는 또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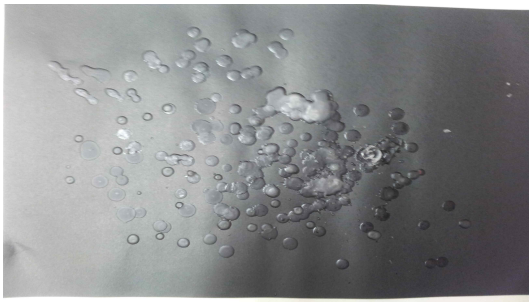
4) 반발성 기법

크레파스나 양초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 물감으로 채색하면 크레파스나 양초로 그린 부분에는 물감이 묻지 않고, 그림이 돋보인다.



5) 스텐실

구멍이 뚫린 종이 안에 물감을 스며들게 하여 찍어내는 공판화를 말한다. 스펀지에 물감 묻혀 찍기, 크레파스 문지르기, 롤러로 밀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6) 크레파스 녹이기

크레파스는 파라핀이 주성분이므로 불로 녹일 수 있다. 크레파스를 칼로 깎아서 도화지 위에 놓고 신문지를 덮은 다음 다리미로 눌러서 녹이거나, 양초에 녹여서 점 찍기, 사포에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얹어 다리미로 녹여 찍어내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7) 탈색 기법

흰색을 제외한 원래의 색을 탈색시켜 하얗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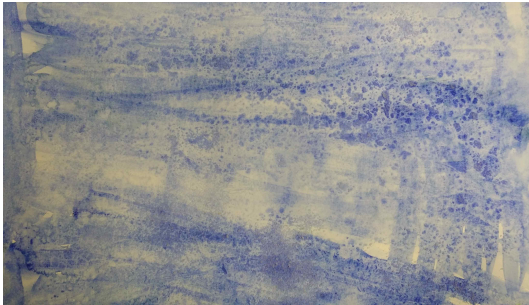
색습자지, 색지, 셀라판지, 탈색 한지 등을 이용해서 탈색 그림을 그린다.

8) 알콜 기법

물감으로 칠한 면이 마르기 전에 알콜을 묻힌 면봉으로 찍으면 알콜이 휘발 되면서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눈 오는 날의 풍경이나 바닷속 장면을 표현할 때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9) 소금 기법

물감으로 칠한 면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물감을 흡수하면서 독특한 무늬가 생긴다. 물감이 너무 많거나 마르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10) 데칼코마니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 펴고 한쪽 면에 물감을 짜고 반으로 접었다 펴면 좌우대칭의 무늬가 생긴다. 물감에 따라 우드락, 비닐, 종이 등 다양한 재료에 활용할 수 있다.



4. 제언 및 결론

미술재료라는 것이 다양하고 생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될 수 있다. 유아동시기에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재료들과 활동방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정을 통해 아동이 발현하는 창의적 표현들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표현해 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며 과정 안에서 아이에게 칭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참고문헌

박정아(2009). 표현력 풍부한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미술놀이 홈스쿨(4~7세).
청어람 미디어

<미술치료 부모교육 설문조사>

(2014년9월22일-10월17일)

1. 아동의 성별, 나이, 장애유형, 본 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 내용을 기입 해주십시오.

① 성별 : (남 / 여) ② 나이 : _____세

③ 장애유형: _____장애 _____급, 미등록(_____), 비장애

④ 이용 프로그램: _____

2. 최근 2년 동안 미술치료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아니오

② 있다면 참여횟수는? (____회)

③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3. 이번 부모교육이 아이와 함께하는 미술놀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미술놀이 활동이 가정에서 아이를 지도하는데 대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다음 부모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참고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동 지도에 필요한 부모교육 주제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② 부모교육에 관한 소감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체간의 운동 조절 방법



팀 명	재활치료 1팀
일 시	2014년 10월 20일 ~ 11월 14일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아동종합복지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체간의 운동 조절 방법

1. 몸통조절에 필요한 체간의 움직임의 중요성

뇌성마비아동들에 있어서 뇌의 손상은 비진행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운동장애의 양상과 근 골격계의 장애가 변화하므로 주기적인 관찰을 통한 변화된 임상양상에 가장 적합한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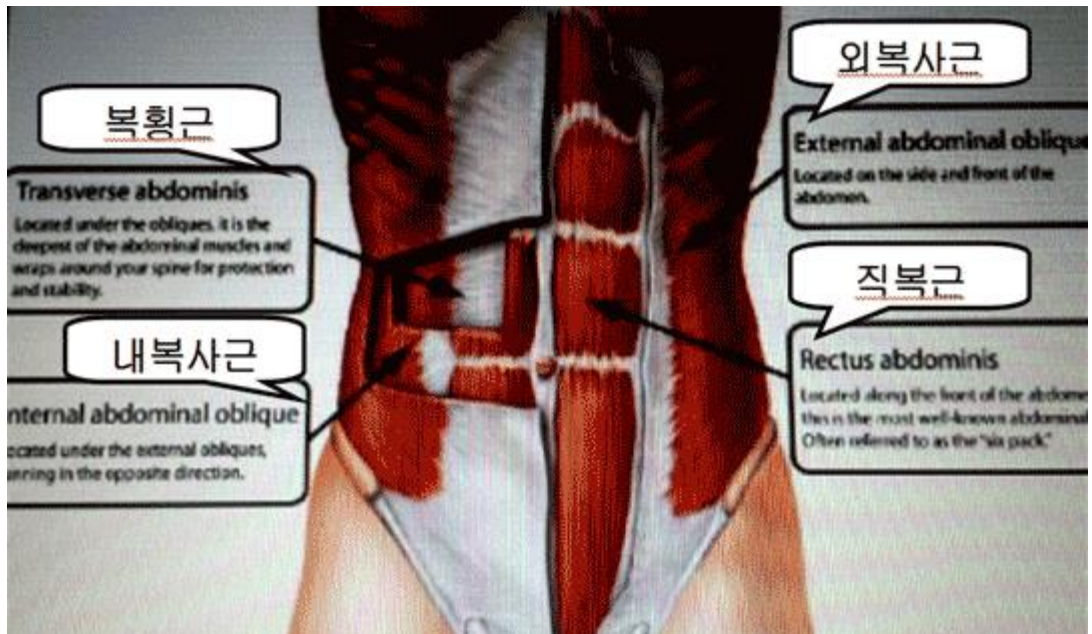
뇌성마비아동들의 특징인 지속적인 근육의 연축으로 인해 관절의 구축이 쉽게 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매일 지속적인 관절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퇴 삼두근, 내측 슬건 근, 대퇴직근, 고관절 내전근 등 연축이 강한 근육에 대해서 신장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근 긴장도를 유지하고 근육의 연축 및 경직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 요법, 물리 요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와 함께 조절된 협응을 위한 운동 훈련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단순히 운동기술을 훈련하는 것보다 목적과 효과를 위한 감각적 식별과 지각능력을 자극하여 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근 골격계의 축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보바스의 신경계 발달 치료법, 보이타 치료법, 고유 체위 감각 근 골격계 축진 방법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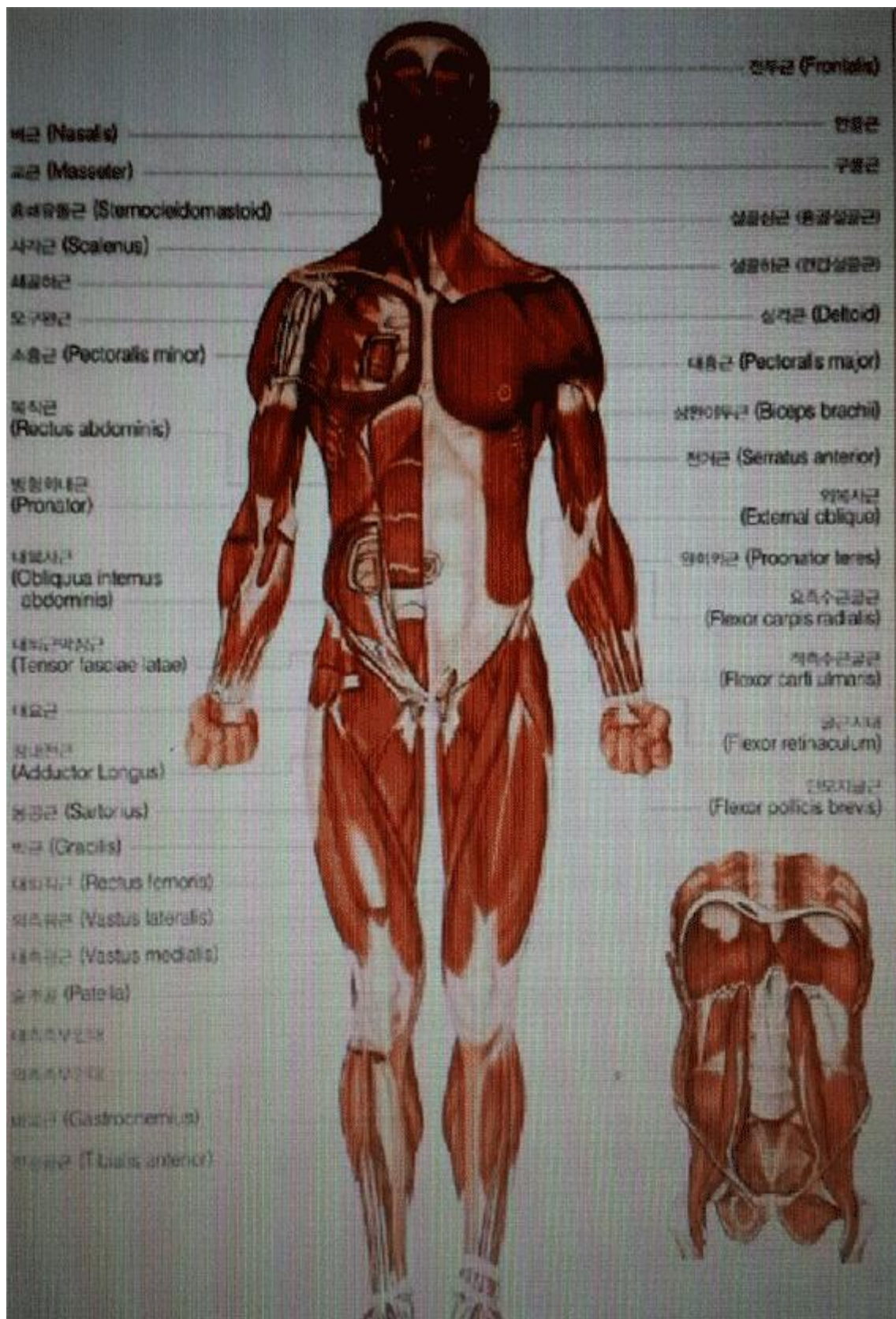
그 중에서 움직임의 중심이 체간에 있으며, 몸의 중심이 체간입니다. 이에 몸 근육의 움직임은 모두 체간에 있는 근육들과 연동되어 나타납니다. 사람은 다리 근육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체간에 있는 근육들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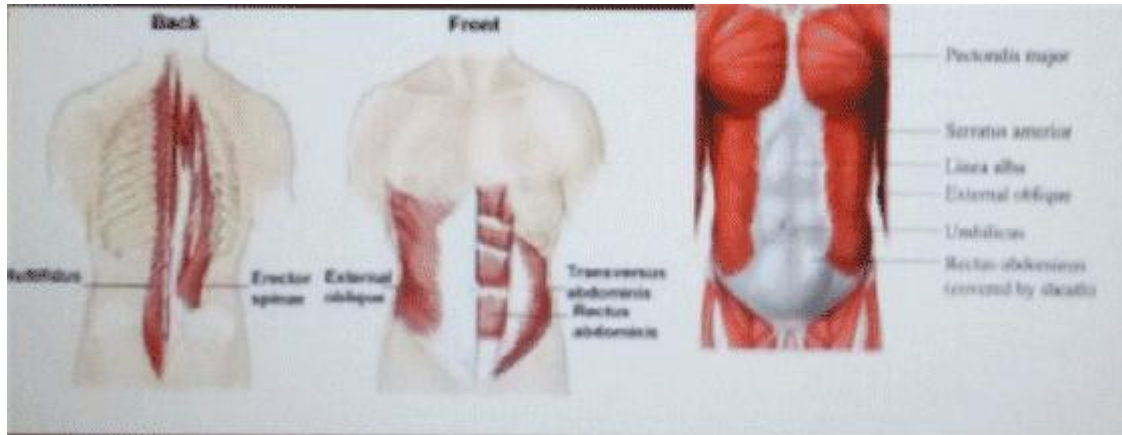
특히 뇌성마비 아동들은 주로 체간근 조절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기본적인 앉기 자세조절이 어렵습니다. 주로 체간근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복부근과 배부신전근의 자극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체간의 운동이 전체 움직임에 관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체간의 근 골격계 구조를 이해함으로 뇌성마비아동들의 가정에서 물리 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체간의 근 골격 구조 및 이해







3. 가정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근육 이완 및 체간근육 자극 운동방법

1) 뇌성마비아동의 치료원리

뇌병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경직형이나 무정위형, 실조형, 이완형 등의 타입은 비 정상적인 근 긴장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자세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첫째, 근육 긴장도의 이완 및 감소

둘째, 균형반응과 정위반응 유도

(* 정위반응: 자동적이면 능동적인 반응, 공간에서 머리의 정상자세를 유지하여 머리와 목, 체간, 체간과 사지의 정상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셋째, 자발적인 능동적 움직임 유도

넷째, 아동에게 적절한 자극을 통한 움직임 유도

2) 뇌성마비 아동의 장애유형별 운동치료 적용 원리

(1) 경직형

경직형 아동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의 뻣뻣함, 즉 경직으로 인한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직형 아동은 최대한 경직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정상에 가까운 관절범위까지 근육을 늘려 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근육의 뻣뻣한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신경발달 자세, 즉 누운자세, 엎드린 자세, 뒤집기, 배밀이, 네발기기, 서기, 걷기 등의 자세를 취해주며 뻣뻣한 부위의 근육을 늘려 주는 것입니다. 경직형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경직은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 됨에 따라 그리고 인지가 높아짐에 따라 근육의 긴장도가 점차 증가하게 되므로 근육의 관절을 근부위별로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에 따라 회전 근육의 움직임으로 뻣뻣한 근육을 감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점차 근 긴장도가 감소되면 비정상 자세를 억제 시켜 주면서 정위 반응과 균형

반응이 나타나게 해주며 정상아동 발달단계에 맞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무정위형, 실조형

관절 가동범위는 정상에 가깝거나 충분하므로 정상 발달단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근육의 수축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치료 시 불필요한 움직임은 억제하기 위해 정상적 자세를 만들어 주고 각 관절에 압박과 두드림 등의 자극을 줌으로써 정상 근 긴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감각 자극 훈련 시는 정상 자세를 취해 주었을 때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근육의 흔들림이나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자극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때 아동은 비정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데 치료사는 아동이 저항하는 정도의 힘을 가하여 정상적인 자세가 유지되도록 운동을 유도하여야 하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아동의 불수의적 움직임이 줄어 들게 되면 자극이나 압력을 점차 약하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 무정위형 : 뇌의 기저핵의 문제로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팔, 다리의 움직임이 벌레와 유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짐. 이러한 움직임은 예기치 못하거나, 의미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조절할 수도 없음. 흥분하면 조절되지 않은 움직임이 증가함.)

(* 실조형 : 소뇌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장애, 하지의 근 긴장도의 장애를 가짐. 증상은 운동거리 측정 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동작이 불안정하여 둔하고 협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균형반응과 정위반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지 면적을 넓게 사용하여 보행을 하게 됨.)

(3) 이완형

근육의 긴장도가 약하여 관절 가동범위가 정상보다 크게 나타남으로 이를 제한 해주어야 합니다. 신경발달 단계 자세에서 각 관절에 정상 감각을 느끼게 해주며, 압박, 두드림 등의 여러 감각 자극을 주어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각 자세에는 운동 감각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절을 자극할 때 아동이 자극에 저항하는 정도만 자극을 가하도록 하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는 아동의 저항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의 압박이나 자극을 주어 근 긴장도를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4) 척추 측만증, 후만, 전만증의 치료원리

뇌병변이나 발달장애 아동에게서 머리카 상·하지 골반의 위치, 장애 정도에 따라 척추 측만증이나 후만, 전만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척추의 변형이 심해지면 자세나 몸통의 불균형으로 인해 고관절 탈구, 배부 장기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병변이나 발달 장애 아동은 정상적 자세 훈련을 통해 올바른 근 골격 상태가 유지되도록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체간의 움직임 촉진 방법

강직으로 인한 모든 부위에서 관절 정상범위까지 늘려줍니다. 심한 경우 아동에게서 비정상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까지 서서히 늘려주어 정상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을 계속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반복이 중요합니다.

관절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경직이 심해져 더욱 강한 구축과 강직, 근력 약화로 발전하게 되어 나중에는 고관절 아탈구 또는 탈구, 척추 측만 등으로 진전되어 정형외과적 수술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 정형외과적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또 다시 강직이 나타나므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절운동을 해야 하고, 관절운동은 모든 자세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 아동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팔꿈치 부위를 보조자가 잡아 주며 보호자는 몸통과 다리를 구부려서 들어 올려 척추의 굴곡과 몸통의 회전 근육을 늘려준다.



- 작은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머리 위에서 보호자의 다리로 아동의 팔을 고정시켜주고 양손으로 아동의 골반과 다리를 들어 올려 척추의 굴곡과 몸통 회전 운동을 시켜준다.



- 아동의 위쪽 골반을 고정시키며 다른 한 손으로 아동의 위쪽 팔을 바깥으로 돌리며, 뒤쪽으로 신전시키면서 아동의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



- 아동의 몸통과 골반을 바르게 정렬한 다음 보호자의 양다리로 아동의 골반 사이에서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아동의 팔이 위로 올리는 것과 어깨근육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준다.



- 상지의 근 긴장도 감소 및 비정상 자세 억제를 통한 머리와 몸통의 조절 :굴림통 위에서 아동의 팔을 위로 올려 보조자가 잡아 주며 보호자는 아동의 골반을 부드럽게 눌러 주면서 몸통을 양옆으로 움직여 준다.

* 주의사항: 팔의 경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드럽고 천천히 시도한다. 신전 현상으로 머리를 뒤로 젖힐 경우 보호자는 아동의 머리를 잡아 약간 숙여 준다.



- 아동이 작을 경우 굴림통 위에 아동을 얹드리고 놓고 보호자의 허리에 아동의 다리를 벌려 아동의 골반을 고정시킨다. 아동의 양팔을 잡고 교대로 위로 올리면서 어깨 근육이 늘어나게 하며 머리와 몸통의 회전을 유도한다. 뺏뺏함이 감소하도록 서서히 움직여 준다.

* 주의사항: 아동의 머리가 너무 뒤로 젖히거나 숙여지지 않도록 한다.



- 뒤집기를 유도하여 몸통의 회전감각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누운 자세에서 아동의 한 쪽 다리와 무릎을 구부려 반대쪽 바닥을 향해 돌려준다. 이 때 보조자는 아동의 어깨를 조절해주며 돌려진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게 하여 아동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한다. 이 때 아동의 머리와 어깨, 몸통, 골반이 회전되며 팔을 지지하고 뒤집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조자는 아동의 머리와 어깨를 약간씩 조절해주어 아동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주의사항: 아동의 팔이 뒤로 가거나 몸통이 뺏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손 지지와 보호 신전 반응유도를 통한 몸통을 조절한다. 공위에서 아동의 다리를 벌리고 등을 펴주며 부드럽게 눌러 주면서 앞으로 밀어 줌으로 손의 지지와 척추 후만증을 조절시킨다. 보조자는 아동의 앞에서 팔이 지지되도록 도와주며 보조자는 아동의 손을 펴서 발로 고정시키고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보조자가 잡아준다.

* 주의사항: 팔이 구부러지거나 골반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 네발기기를 유도하여 몸통과 골반의 정렬자세를 유도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굴림통 위에서 또는 보호자의 다리를 이용하여 네발기기 자세를 취해준다. 아동의 손바닥을 펴서 보조자의 발로 고정시키고, 두 손으로 아동의 양팔을 잡아준다. 아동의 한쪽 무릎을 지지하게 하고 반대쪽 무릎과 골반을 쪽 펴주어 근육을 늘려주었다가 다시 구부려 주기를 반복한다. 이 때 신전현상이 강하여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펴진 쪽 골반 안쪽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면 굴곡현상이 일어난다.

* 주의사항: 무릎이 지지된 쪽 다리에서 신전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



- 앉은 자세에서 몸통 조절하기.

다리를 고정시키거나 보조자가 아동의 앞에서 다리를 잡아 주게 하고 보호자는 아동의 뒤에서 한 쪽 팔을 외 회전시키면서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펴주어 뒤쪽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뒤에서 손등을 고정시켜 양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잡아 주면서 양옆으로 체중 이동을 시킨다. 이 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숙이게 하여 어깨와 팔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척추를 쪽 펴지게 해주면서 척추 후만증과 측만증을 교정할 수 있다.



- 몸통과 하지의 근력 증진 및 몸통의 회전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아동을 굴림통 위에 앉히고 한 쪽 다리를 바닥에 지지하고 반대쪽 다리로 굴림통을 넘어가게 한다. 보호자는 뒤에 앉아 필요하면 아동의 골반과 무릎을 고정시켜 준다. 이 자세로 인해 몸통과 다리의 체중 이동과 균형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아동의 골반과 무릎을 잡아 아동 스스로 고리를 잡아 몸통을 회전하여 반대측에 끼우게 한다. 이에 양측 무릎은 밖으로 돌려지며 발의 외측이 지지되게 조절하도록 하면서 몸통을 최대한 늘려서 회전되게 한다.

* 주의사항: 지지한 쪽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 편마비형

- 아동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손상된 쪽 팔을 지지하고 옆으로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 자세는 처음에 손상된 쪽 팔을 바깥 쪽으로 돌려 신전시키며 머리 위로 올려 어깨와 몸통 근육을 늘려 준다. 아동의 손목을 신전시키고 손가락을 펴주어 아동의 옆에 두어 고정시켜 체중을 지지하게 한다.



- 네발기기 자세에서 일어서기 자세유도를 통한 몸통을 조절할 수 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상된 쪽 손과 무릎을 지지하게 하면서 몸통을 오목한 쪽으로 늘려준다. 이때 손상되지 않은 쪽 팔과 다리가 지지 되지 않게 한다. 보조자가 손상된 쪽 팔과 손을 잡아주는 동안 보호자는 손상된 쪽 어깨와 골반으로 체중 지지와 체중 이동을 시킨다. 이에 손바닥을 지지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보호자는 체중이 손상된 쪽으로 가게 밀어 주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체중이동을 경험 시킬 수 있다.





- 무정위형이나 실조형의 아동에서 운동자세 유도에서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자세에서 필요한 근긴장을 유지하게 하며 불필요한 근육의 흔들림이나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자극을 주어 비정상 자세를 억제시킨다. 경직을 동반한 무정위형에서는 근육 이완 운동을 시도한 후 관절 압박운동을 실시한다. 보조자는 아동의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게 무릎사이에 고정시키면서 아동의 팔을 90°로 세워 손바닥에 압력을 가한다. 이 때 보조자는 아동의 양다리를 대칭적으로 구부려 주면서 골반 쪽으로 압박을 주어 불필요한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시킨다.

- 네발기기 자세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불수의적인 움직임이나 흔들리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자세를 고정시킨다. 아동이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움직일 때, 보조자는 유도하려는 자세를 정확히 잡아 주어 계속 자세를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동작은 아동의 긴장도가 낮아져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면 시행하면 된다.

— 척추측만증에 적용할 수 있는
몸통의 조절 방법

— 뇌병변이나 운동발달이 지체되는 아동에게 머리카락이나 상지와 하지, 골반의 위치, 장애 정도에 따라 척추의 측만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자세를 통해 정상적인 근골격 상태가 유지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 공이나 굴림통 위에서 아동의 몸통이 오목한 쪽이 볼록하게 되도록 공을 기울여 주면서 척추 측만증을 교정시킨다. 아동은 기울이는 쪽으로 안 떨어지려고 머리를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정위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오목한 쪽의 몸통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때 손이나 발, 무릎을 바닥에 지지하려고 한다. 반대쪽 다리에서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회전되고 발목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

* 주의사항: 공이나 굴림통이 아동에게 맞지 않고 너무 높으면 아동이 높이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인하여 더욱 뺏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높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네발기기 자세에서 척추가 오목한 쪽의 팔을 지지하게 하고 반대쪽 팔은 아동의 등 뒤에서 고정시킨다. 보호자는 아동의 뒤에서 오목한 쪽 척추가 볼록하게 옆으로 휘어지도록 아동의 어깨에서 잡아주며 척추 측만증을 교정시킨다. 이때 보조자는 아동의 팔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 준다.



- 아동을 공 위에서 양팔을 위로 올리고 누워 있게 한다. 아동의 긴장이 풀어지게 하며 앞·뒤, 양 옆으로 공을 굴려준다. 보호자는 아동의 무릎을 90°로 구부려주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하거나 아동에 양다리를 외 회전하여 잡아 준다. 이 자세에서 척추 후만증과 측만증을 교정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http://cafe.naver.com/aibarun> " 발췌
2. "<http://cafe.naver.com/edubodycore/224>" 발췌
3. "<http://snuh.snu.ac.kr/web/info-second/rehabil/3.htm>" 발췌
4. 서혜정 외 3인. 2013.08. 「경직성 양하지 마비아의 5가지 치료적 운동 시 핵심 안정성과 관련된 근활동 비교분석」
5. "<http://cafe.daum.net/ptcairo> " 발췌
6. 역자 남동현. 「테클린의 소아물리치료」. 영문출판사.
7. 노종실 저. 「발달장애 아동의 위한 운동치료」, 고려의학출판사.

언어표현훈련



팀 명	재활치료2팀
일 시	2014년 10월 27일 ~ 11월 14일
담 당	권윤희, 김가인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 표현 훈련

1) 발어 이전기 표현 언어

- (1) 자신의 감정을 소리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① 즐거움의 표현 방법으로 웃음과 소리내기
 - ② 감정적인 억양을 넣어 소리내기
 - ③ 그네를 타면서 "이야~", "어머~"하고 소리내기
 - ④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으며 "우와"하고 소리내기
 - ⑤ 다양한 [자음+모음]의 음절을 반복하며 소리내기
- (2) 제시되는 간단한 소리를 듣고 모방할 수 있다.
 - ① 입모양을 보면서 간단한 소리 모방하기
 - ② 입을 크게 벌려 "아 아~"하고 타잔 소리 흉내내기
 - ③ 자음과 모음을 포함한 음절 모방하기
 - ④ "엄마", "아빠", "넌내", "맘마"등의 단어 모방하기
- (3) 제시되는 몸 동작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
 - ① 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동작 모방하기
 - ② 손의 동작을 볼 수 있는 동작 모방하기
 - ③ '코, 코, 코' 놀이를 통해 신체 부위 가리키기
 - ④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에 맞추어 율동 하기
 - ⑤ '둘이 살짝' 노래에 맞추어 율동 하기
- (4) 의사소통적인 기능이 있는 몸동작을 취할 수 있다.
 - ① "안녕", "빠이빠이" 동작 모방하기
 - ② 먹는 상황에서 몸동작 익히기
 - ③ 요구 상황에서 몸동작 익히기
 - ④ "예/아니오" 질문에 적절히 고개 동작 취하기
 - ⑤ "어느 것을 가질래요?"라는 질문에 손으로 가리키기
- (5) 놀이 활동을 통해서 의성어를 듣고 모방할 수 있다.
 - ① 미니 오르간에서 들리는 동물 울음소리 모방하기
 - ② 동물 그림 중 꺼낸 동물의 울음소리 듣고 따라 하기
 - ③ 동물 울음소리 나오는 노래 듣고 모방하기
 - ④ 장난감이나 물체에서 나는 소리 모방하기
- (6) 놀이 활동을 통해서 의태어를 모방할 수 있다.
 - ① 동물의 행동을 흉내낸 말 모방하기
 - ② 웃음을 나타내는 말 모방하기
 - ③ '내 얼굴 네 얼굴'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 하기
 - ④ '빙글빙글 세탁기'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 따라 하기

2) 단어 표현하기

- (1) 사진이나 실물에서 가족, 친구들을 지칭할 수 있다.
 - ① 자신의 이름 말하기
 - ② 친구의 이름 말하기
 - ③ '꿀떡' 게임을 통해 자신과 친구 이름 지칭하기
 - ④ 가족의 호칭을 말하기
 - ⑤ 놀이 활동을 통해 가족 이해하기
- (2) 시각, 촉각적 자극으로 신체의 명칭을 말할 수 있다.
 - ① 시각적 단서로 제시되는 신체 부위의 명칭 말하기
 - ②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에 따라 신체 명칭 말하기
 - ③ '손을 가슴에, 어깨에~' 활동으로 신체 명칭 말하기
 - ④ 눈을 감고 신체를 접촉한 후, 그 부위의 명칭 말하기
- (3) 일상적인 동작을 보고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식사하는 동작을 보고 그 동작을 말로 표현하기
 - ② 공부하는 동작을 보고 그 동작을 말로 표현하기
 - ③ 청소하는 동작을 보고 그 동작을 말로 표현하기
 - ④ 교통 수단을 보고 그 동작을 말로 표현하기
 - ⑤ 다양한 활동의 그림 카드를 보고 말로 표현하기
- (4) 자기 소유물을 대명사 '나', '내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자신의 사진을 보며 자신을 표현하기
 - ② 좋아하는 음식을 제시하면 자신을 표현하기
 - ③ 장난감을 들어 보이면 자신을 표현하기
 - ④ 소유자를 나타내어 표현하기
- (5) 물체의 상태를 비교해서 표현할 수 있다.
 - ① 실물을 비교하여 상태 표현하기
 - ② 목표 특성이 뚜렷한 다음 물건의 상태 표현하기
 - ③ 목표 특성이 유사한 다른 물건의 상태 표현하기
 - ④ 노래를 통해 상태 표현하기
- (6) 실물, 그림을 통해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 있다.
 - ① 단 단어로 '크다/작다' 표현하기
 - ② [수식+실체]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③ [실체+상태]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7) 실물, 그림을 통해 '많다', '적다'를 표현할 수 있다.
 - ① 단 단어로 '많다/적다' 표현하기
 - ② [수식+실체]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③ [실체+상태]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8) 실물, 그림보고 '깨끗하다', '더럽다'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단 단어로 '깨끗하다/더럽다' 표현하기
- ② [수식+실체]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③ [실체+상태]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9) 실물, 그림보고 '뜨겁다', '차갑다'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단 단어로 '뜨겁다/차갑다' 표현하기
 - ② [수식+실체]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③ [실체+상태]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10) 실물, 그림보고 '예쁘다', '미다'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단 단어로 '예쁘다/미다' 표현하기
 - ② [수식+실체]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③ [실체+상태]의 두 단어 문장으로 상태 표현하기
 - ④ '내 얼굴 네 얼굴' 노래 부르며 "예쁘다", "미다" 표현하기
- (11) 기본 색깔을 알고 여러 물체의 색깔을 말할 수 있다.
 - ① 기본적인 색깔 표현하기
 - ② 여러 색깔을 상자 속에 넣으며 색깔 말하기
 - ③ 그림을 색칠하면서 크레파스의 색 말하기
 - ④ '나비야' 노래를 부르며 색깔 이름 말하기
- (12) 요구나 '긍정/부정'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말로 표현하기
 - ② 화장실 사용이 필요할 때 말로 표현하기
 - ③ 배가 고플 때 욕구를 말로 표현하기
 - ④ '긍정/부정'의 형용사를 말로 표현하기
- (13) 물체의 위치를 '안/밖'으로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 ① 당연한 위치에서 '안(속)' 표현하기
 - ② 인위적인 사물 배치를 보고 '안(속)' 표현하기
 - ③ '밖'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 ④ '안(속)/밖'을 구별하여 표현하기
- (14) 물체의 위치를 '위/아래'로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 ① 당연한 위치에서 '위' 표현하기
 - ② 인위적인 사물 배치를 보고 '위' 표현하기
 - ③ '아래'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 ④ '위/아래'를 구별하여 표현하기

3) 두 단어 문장 표현하기

- (1) [목적+행위]의 두 단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원하는 물건을 놓고 "~주세요"로 표현하기
 - ② 동작 그림을 보고 [목적+행위]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 ③ 기능이 있는 물건을 [목적+행위] 문장으로 표현하기
- (2) [소유자+소유]의 두 단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원하는 물건을 [소유자+소유]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 ② 여러 물건을 [소유자+소유]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 ③ '내 모자' 노래로 [소유자+소유]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 (3) [행위자+행위]의 두 단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행위' 말을 바꿔서 [행위자+행위]로 표현하기
 - ② '행위자' 말을 바꿔서 [행위자+행위]로 표현하기
 - ③ 여러 동작을 보고 [행위자+행위]의 구로 표현하기
- (4) [실체+장소]의 두 단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실체'는 고정시키고 '장소'만 변형시켜 표현하기
 - ② '장소'는 고정시키고 '실체'만 변형시켜 표현하기
 - ③ 여러 그림을 보고 [실체+장소]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 (5) [도구+행위]의 두 단어 구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청소에 사용하는 도구와 행동을 구로 표현하기
 - ②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와 행동을 구로 표현하기
 - ③ 씻을 때 사용하는 도구와 행동을 구로 표현하기
 - ④ '도깨비 잡이' 놀이에서 행위를 강조하며 표현하기

4) 세 단어 문장 표현하기

- (1) [행위자+목적+행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사과 먹으며 "~가 사과를 먹어요"로 표현하기
 - ② 물건 집어넣으며 [행위자+목적+행위]로 표현하기
 - ③ 상황 그림을 보고 [행위자+목적어+행위]로 표현하기
- (2) 그림을 보고 [행위자+목적+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행위자'를 고정, '장소와 행위' 변화시켜 표현하기
 - ② '장소와 행위'를 고정, '행위자' 변화시켜 표현하기
 - ③ 동작 그림을 보고 [행위자+장소+행위]로 표현하기
- (4) 여러 단어의 문장을 사용하여 길게 표현할 수 있다.
 - ① 한 가지 활동의 그림을 보고 문장으로 표현하기
 - ② 여러 활동의 그림을 보고 문장으로 표현하기
 - ③ 그림의 순서에 따른 문장을 길게 표현하기

5) 접문장으로 표현하기

- (1) 주어, 목적어에 접속 조사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 ① 소꿉놀이 상황에서 '~하고'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 ② 인형 놀이 상황에서 '~하고'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 ③ 그림을 보면서 두 개의 주어 접속하여 표현하기
- (2) 두 개의 문장을 연결어미로 이어서 표현할 수 있다.
 - ① 한 사람이 하는 다른 행동을 보고 '고'로 표현하기
 - ② 물건을 보고 형용사를 접속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 ③ 행위자가 다른 두 그림을 보고 '고'를 넣어 표현하기
 - ④ 색종이를 잘라 붙이면서 '고'를 넣어 표현하기
- (3) 이야기의 질문에 맞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그림 동화책에 대한 질문에 내포문으로 표현하기
 - ② 전래 동화책에 대한 질문에 내포문으로 표현하기
 - ③ 만화 영화에 대한 질문에 내포문으로 표현하기

6) 간단한 생활 용어 익히기

- (1) 간단한 물음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
 - ① 간단한 물음에 '예/아니오'로 대답하기
 - ② 짧은 이야기를 듣고 물음에 대답하기
 - ③ 관공서나 회사에서 하는 일의 물음에 대답하기
- (2)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다.
 - ① 눈을 가려 친구 목소리 듣고 난 후 친구 지적하기
 - ② 간단한 동화 듣고 나오는 사람 말하기
 - ③ 녹음된 친구 음성 듣고 누구인지 말하기
- (3) 생활에 필요한 용어를 말할 수 있다.
 - ① 용변에 관한 말하기
 - ② 아픈 곳 말하기
 - ③ 식구들의 호칭 말하기
 - ④ 직업에 관련된 사람의 호칭 말하기
 - ⑤ 일상 생활 필수품이 쓰이는 곳 말하기
 - ⑥ 심부름 할 때 사용하는 말하기
 - ⑦ 배고플 때 사용하는 말하기
 - ⑧ 식구들의 호칭 말하기

7)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기

- (1) 그림을 보고 그림의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 ① 그림을 보고 그림에 나오는 대상 말하기
 - ② 그림에 나오는 모습이나 행동을 똑똑하게 말하기
 - ③ 장면을 보고 행동을 말하기
 - ④ 장면을 보고 생각을 말하기
- (2) 놀이를 통해 여러 이름을 똑똑하게 말할 수 있다.

- ①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로 친구 이름 말하기
- ② 학교의 이름 똑똑히 말하기
- ③ 경찰 놀이를 통해 동네 이름을 똑똑히 말하기
- ④ '뭉하니' 노래 부르며 친구 이름 말하기
- (3) 말놀이하는 방법을 알고 따라 말할 수 있다.
 - ① 들려주는 문장을 틀리지 않게 따라 말하기
 - ② 녹음기에서 들리는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하기
 - ③ 짐승, 꽃, 나무 이름 말하기 놀이하기

8) 사물의 이름 말하기

- (1) 여러 가지 탈것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① 도로를 달리는 탈것의 이름 말하기
 - ② 철로를 달리는 탈것의 이름 말하기
 - ③ 하늘을 나는 탈것의 이름 말하기
 - ④ 물에 뜨는 탈것의 이름 말하기
- (2) 동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① 육지에 사는 동물의 이름 말하기
 - ② 땅에 사는 동물의 이름 말하기
 - ③ 물 속에 사는 동물의 이름 말하기
 - ④ 하늘을 나는 동물의 이름 말하기
- (3) 생활 용품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① 그릇 종류의 이름 말하기
 - ② 조리 용구의 이름 말하기
 - ③ 세면 용구의 이름 말하기
 - ④ 보관 용기의 이름 말하기
- (4) 청소 도구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① 쓰는 도구의 이름 말하기
 - ② 닦는 도구의 이름 말하기
 - ③ 쓰레기를 모으는 도구의 이름 말하기
 - ④ 쓰레기 처리하는 것들의 이름 말하기
- (5) 학용품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① 필기 도구의 이름 말하기
 - ② 그리기 도구의 이름 말하기
 - ③ 만들기 도구의 이름 말하기
 - ④ 보관 용구의 이름 말하기
- (6) 교실 비품의 이름 말하기
 - ① 보관 영구의 이름 말하기

- ② 정리 용구의 이름 말하기
- ③ 환경 용품의 이름 말하기
- ④ 부착 용품의 이름 말하기

9) 대상에 맞게 말하기

- (1) 대상에 따라 알맞은 호칭을 쓸 수 있다.
 - ① 삽화를 보고 이야기하기
 - ② 친구 이름 부르면 대답하기
 - ③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등의 호칭 알고 부르기
 - ④ 형제간의 호칭 알고 부르기
 - ⑤ 의사, 경찰관, 집배원 등의 호칭 알고 부르기
- (2) 대상에 따라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
 - ① 웃어른에 대한 인사말 하기
 - ② 웃어른께 존댓말 쓰기
 - ③ 예삿말 알고 쓰기
 - ④ 높임말 알고 쓰기
- (3) 묻는 말에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다.
 - ① 학교 생활에서의 물음에 대답하기
 - ② 어른이 물을 때 알맞게 대답하기
 - ③ 친구가 물을 때 알맞게 대답하기
 - ④ 직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 바르게 대답하기
- (4) 말놀이를 통하여 대상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 ① 그림 카드보고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 ② 앞은 말에 따른 뒷말 잇기
 - ③ 말 잇기 놀이를 통해 대상에 맞는 말을 쓰기
 - ④ 녹음기 소리를 듣고 뒷말을 소리내어 잇기
- (5) 느낌이나 그림을 보고 차례에 따라 말할 수 있다.
 - ① 심부름 한 후 행동을 이야기하기
 - ② 그림을 보며 차례에 맞게 말하기
 - ③ 피부 감각으로 변별할 수 있는 어휘 사용해 말하기
 - ④ 시각, 청각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말 사용해 말하기

10) 상황에 맞게 말하기

- (1) 일의 순서에 따라 말할 수 있다.
 - ① '즐거운 아침' 노래로 차례대로 하는 일 말하기
 - ② 그림을 한 장면씩 보며 종합하여 차례대로 말하기
 - ③ 아침, 낮, 저녁의 순으로 이야기하기

- ④ 그림 연극을 보면서 각 장면에 따른 이야기하기
- (2)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할 수 있다.
 - ① 노래하며 신체 표현하기
 - ②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인사말 하기
 - ③ 학교에 갈 때와 선생님께 하는 인사말 하기
 - ④ 집에 돌아 갈 때 대상에 알맞은 인사말 하기
 - 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말 하기
- (3) 놀이를 통하여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 ① 병원 놀이를 통해서 알맞은 말하기
 - ② 가게 놀이를 통해서 알맞은 말하기
 - ③ 학교 놀이를 통해서 알맞은 말하기
 - ④ 소꿉놀이를 통해서 알맞은 말하기

11) 시제에 맞게 말하기

- (1) 현재 시제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 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 ② 지금 앞에 있는 것에 대해 말하기
 - ③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해 말하기
 - ④ 지금 있는 장소에 대해 말하기
- (2) 과거 시제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 ① 어제 하였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② 어제 간 곳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③ 어제 같이 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④ 어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 (3) 미래 시제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 ① 내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② 내일 갈 곳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③ 내일 만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④ 내일 볼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 (4) 때와 장소에 따라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
 - ① 여름, 겨울 알기
 - ② 계절에 맞는 말하기
 - ③ 외출과 귀가 시의 인사말 바르게 하기
 - ④ 상대방에 따라 말씨나 태도를 알맞게 표현하기

12) 바른 자세로 말하기

- (1) 바른 자세로 상대방을 보며 똑똑하게 말할 수 있다.

- ①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
- ② 묻는 말에 천천히 대답하기
- ③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똑똑한 소리로 말하기
- ④ 상황 장면의 설명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하기
- (2) 알맞은 소리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 ① 교실에서 위치와 거리를 이동하면서 인사말 하기
 - ② 1대 1로 알맞은 거리에서 인사말 하기
 - ③ 알맞은 거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인사말 하기
 - ④ 적당한 크기의 소리로 말하기
- (3) 공손한 태도로 말할 수 있다.
 - ① 공손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② 친구끼리 이야기 할 때의 바른 태도를 알기
 - ③ 윗사람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하기
 - ④ 정다운 말, 예삿말, 고운말 쓰기
 - ⑤ 높임말, 정중한 태도로 말하기

13) 화용적 기능 익히기

- (1) 문장으로 물건이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
 - ① 소꿉놀이를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말로 표현하기
 - ② 소꿉놀이를 통해서 원하는 행동을 말로 표현하기
 - ③ 전화 받는 가상 놀이를 통해 요구 사항 표현하기
- (2) 여러 활동을 하며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 할 수 있다.
 - ① 먹는 놀이 활동을 하면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기
 - ② 학교 놀이 활동을 하면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기
 - ③ 청소 활동을 하면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기
 - ④ 가려진 그림을 그리며 무엇인지 적절히 대답하기
- (3) 변화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장난감이나 블록의 여러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기
 - ② 복장에 따른 변화를 보고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 ③ 외모에 따른 변화를 보고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 ④ 아동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14) 짧은 말 전달하기

- (1) 여러 상황에서 한 단어로 된 말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물건을 요구하는 한 단어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② 동작 그림을 보면서 한 단어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③ 기능을 나타내는 한 단어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④ 놀이 활동을 통해 한 단어로 된 말을 전달하기
- (2) 여러 상황에서 [명사+명사]로 된 말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물건을 요구하는 [명사+명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② 동작 그림을 보며 [명사+명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③ 기능을 나타내는 [명사+명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④ 놀이 활동을 통해 [명사+명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3) 여러 상황에서 [명사+동사]로 된 말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물건을 요구하는 [명사+동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② 동작 그림을 보며 [명사+동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③ 기능을 나타내는 [명사+동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④ 놀이 활동을 통해 [명사+동사]로 된 말을 전달하기
- (4) 문장으로 된 말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물건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② 동작 그림을 보며 문장으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③ 기능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된 말을 전달하기
 - ④ 놀이 활동을 통해 문장으로 된 말을 전달하기

15) 재미있었던 일 소개하기

- (1)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할 수 있다.
 - ①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
 - ② 녹음기를 들으며 귀 기울이기
 - ③ 상대방의 눈을 바라다보기
 - ④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기
- (2) 학교에서 하는 일을 말할 수 있다.
 - ①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 말하기
 - ② 학교에서 기분 나빴던 일 말하기
 - ③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 말하기
 - ④ 학교에서 친구와 지냈던 일 말하기
- (3) 집에서 하는 일을 말할 수 있다.
 - ① 집에서 심부름했던 일 말하기.
 - ② 동생과 사이좋게 놀았던 일 말하기
 - ③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일 말하기
 - ④ 부모님과 지냈던 일을 말하기

16) 간단한 이야기하기

- (1)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
 - 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기

- ② 자기의 가족을 소개하기
- ③ 자기 장기 자랑 소개하기
- ④ 재미있었던 일들 소개하기
- (2)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 ① 가보고 싶은 친구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② 가보고 싶은 동물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③ 가보고 싶은 박물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④ 가보고 싶은 명승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 (3)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 ①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②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③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④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이야기하기
- (4)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 ① 자신이 되고 싶은 선생님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② 자신이 되고 싶은 운동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③ 자신이 되고 싶은 법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 ④ 자신이 되고 싶은 전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출처: 민우의 언어치료(club.cyworld.com/mwslp)

장애인 뉴스포츠



팀 명	재활치료2팀
일 시	2014년 10월 27일 ~ 11월 7일
담 당	특수체육교사 최보람
장 소	최보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뉴스포츠

1. 장애인 뉴스포츠

1) 장애인 생활체육에서의 의미

최근 장애인체육은 과거 기능중심의 엘리트 체육이 아닌 사회에서 누구나 쉽고 익숙하게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포츠는 현대사회의 특징인 개인중심, 다양성, 다문화주의, 양성평등 등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스포츠 활동이라는 당위로 도입되었다. 즉,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전제아래 참가자 중심의 체험형 스포츠를 대표하는 용어이다. 뉴스포츠란 국제적 규칙이 통일된 스포츠와는 달리 규칙의 간이성과 게임의 간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참가자 지향의 스포츠 총칭하는 것이다.

뉴스포츠의 정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엘리트 스포츠와 대조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 레크리에이션 협회에서 뉴스포츠에 대하여 자주 인용되는 단어는 ‘3세대 스포츠’ 즉, 스포츠를 통하여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아들 삼세대가 함께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말하며, 일반체육 뿐 아니라 특수체육에서도 몇 해 전부터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딱딱한 형식을 갖춘 경기가 아리나 레크리에이션 게임형태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많은 뉴스포츠는 신체활동에 거부감이 있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에게 적용하여 신체활동을 이끌어 내기에는 더 할 나위 없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2) 정상화의 대입

정상화 원리란 장애나 기타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하지 않은 환경 및 생활방식을 제공해 주기 위한 원리이다. 스웨덴의 니르제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볼프웬스머거에 의해서 장애인 서비스의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정상화의 원리는 특수교육에 적용되어 최소제한환경의 개념을 탄생시킨 촉매적 역할을 하였다.

정상화(Normalization)는 장애인이 사회 주류의 규준과 패턴에 가능한 한 유사한 일상생활의 패턴과 조건을 즐겨야 한다는 이상을 구체화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원리이며, 철학이다. 이러한 정상화는 그 개념이 제안된 이후 지적장애인은 물론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이론, 정책 및 실제의 형성에 기본이 되어 왔다. 그리고 정상화는 장애인을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보건시설과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학생들을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상화는 장애인을 더욱 참여적인 입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뉴스포츠는 그 자체가 특수체육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포츠는 기구부터 규격, 게임 방법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변형 가능한 유연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유연성을 교육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체육 프로그램에 제한 없이 참가함으로써 성취감이나 안정감을 갖기보다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겪게 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운동적 제한점이나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재미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알맞게 수정, 보완, 변형, 적용된 여러 활동이라는 의미의 ‘Adapted Physical Education’ 즉, 응용체육으로서의 특수체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정상화가 실현되어야하는데 사회통합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체육활동으로서, 특히 장애인 뉴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스포츠이다.

3) 새로운 스포츠의 개발

장애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은 획일화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체육활동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생활체육이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인노인은 일반 장애인의 운동참여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장애계층 내에서도 소외되는 계층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노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의 종목 중심에서 활동중심의 생활체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종목을 개발하고 체계화 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에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편의제공이 없이도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환경 등을 기획, 설계, 개발, 제조, 건축하는 보편적 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0년 8월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프로그램 개발’ 공모하였고, 과제선정 기준으로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수월성, 보급성과 현장 적용가능 여부, 프로그램의 유익성(건강), 재미, 안전성 등을 삼았다.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프로그램 개발’ 공모결과 트레일 오리엔티어링, 휠체어 좌구, 장애인택견, 핀수영, 슈그볼, 인라인하키, 스포츠 스테킹 종목의 새로운 7가지 생활체육 종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장애인 뉴스포츠 종목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중점으로 하여,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하면서 즐겁고 건강에 유익한 생활체육 종목 보급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 및 관심증대, 장애인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한 장애인스포츠 서비스의 질과 경제성 증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뛰어넘어서 전문체육대회종목으로의 육성과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이루려는 부수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2. 장애인 생활체육에서의 뉴스포츠 적용

1) 장애인 생활체육에서의 뉴스포츠

장애인생활체육에서의 뉴스포츠가 가지는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생활체육 참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생활체육 참여는 장애인들에게 건강, 재미,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장애인에게 생활체육참여는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장애인을 떠나서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에 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는데 이러한 생활체육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도 찾고 자존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바탕이 돼서 사회참여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초를 마련할 수 있기 “ 때문에 체육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덜 필요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생활체육의 의미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생활체육 참여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체력과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비만,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강 유지 및 증진 측면에서 신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생활체육의 참여를 통하여 정서적 측면으로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신감 등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함께 운동을 하는 동료나 지도자를 통하여 사회적 측면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의 참여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포츠는 장애아동들이 이만한 축구공 뽕뽕 차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한 공을 가지고 조금 더 수월한 공간에서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을 보일 수 있고,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죠.”

“뉴스포츠는 장애인 누구나 상당히 접하기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주(2010)는 딱딱한 형식을 갖춘 경기가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게임형태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많은 뉴스포츠는 신체활동에 거부감이 있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에게 적용하여 신체활동을 이끌어 내기에는 더 할 나위 없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고, 이상조(2010)와 이현주(2010)는 뉴스포츠 그 자체가 특수체육이라고 볼 수 있고 뉴스포츠는 기구부터, 규칙, 게임방법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변형 가능한 유연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장애인 뉴스포츠 적용 사례

1) 경기도 교육청 프로그램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뉴스포츠 한마당”

“우리도 남들과 다르지 않아요”

6일 '2012년 경기도 특수학교·학급 뉴스포츠 한마당' 열려

김기흥기자 k2j@hk.co.kr

입력시간 : 2012.11.07 17:21:41 수정시간 : 2012.11.07 17:24:11



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특수학교·학급 뉴스포츠 한마당'에서 장애 학생들이 아이스하키를 닮은 '플로어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 스포츠 찬바라 활용 사례

공격 성향 강한 지적장애아동 집중력·성격 순화 효과 ‘탁월’



스포츠 찬바라·요가

스포츠 찬바라와 요가가 장애아동들의 재활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되며 효용을 얻고 있다.

특히 집중력이 부족하고 공격성이 강한 지적장애아동들의 집중력 향상과 성격순화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장애인 비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찬바라는 감도를 본뜬 탄력 장막으로 스펀지모양의 소재를 사용, 찢어기와 막기 등의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뉴스포츠다.

규칙도 1회 공격 1회 수비로 간단하게 진행되며 소재도를 사용해 위험성이 적어 장애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공격성향이 강한 지적장애 아동들의 특성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이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찬바라를 접한 장애아동들의 경우 알뜰한 볼에서 상대를 공격하

거나 수비하는 반복학습을 통해 감정조절을 익히게 돼 공격성향이 크게 감소하며 평소 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제재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역시 함께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있다.

요가 또한 지적장애아동들의 집중력 향상과 비만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흔히 생각하는 요가는 유연성이 강조되는 어려운 동작들을 떠올리게 돼 장애아동들이 하기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는 간단하며 재미있는 동작으로 이뤄져있다.

예를 들면 한 다리를 들고 허벅지를 표현하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거북이 자세를 취하는 등 동물을 형상화한 동작을 표현해 장애아동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요가와 비슷하나 근력운동을 위주로하는 필라테스와 음악 놀이기 등도 지적장애아동들의 행동발달에 도움을 주는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찬바라와 요가, 필라테스, 음악 놀이기 같은 지적장애아동행동발달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부모들은 각 시군생활체육회와 복지관 등에 문의해 종목에 맞게 자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조성윤기자/ty602@kxnews.com



3) 셔플보드 운영 사례



4. 뉴스포츠 프로그램 종류

1) 플라잉 디스크

플라잉디스크를 사용하는 경기는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스포츠로의 성격이 강한 스포츠이다.

스포츠 종목까지 매우 다양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즐길 수 있다. 프리즈비는 1999년 AP통신 선정 "20세기 10대 히트 발명품" 중의 하나이며, 뉴욕타임즈가 "미래의 스포츠"라고 격찬한 바 있는 전 세계 6000 만 동호인, 경기자수 700만에 육박하는 대중스포츠이다.

* 장애아동 프로그램 활용법: 디스크 탐구하기, 디스크 던지기, 과녁 맞추기 등 경쟁 활동, 마크 활동으로 모뎀 점프하기 등

도전활동에 속하는 표적/투기 도전영역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던지기 운동기능을 향

상시킴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까지 개념화하게 된다. 집중과 자기 통제를 통해 자기조절의 개념을 알고 내·외적인 도전과 극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스포츠 스택킹

스포츠스택킹은 1980년대 초 미국 서해안의 어린이들이 종이컵으로 놀이를 하던 것에서 유래되어 1990년대 중반에 스포츠로서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교육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2개의 스택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또 허물어가는 기술과 스피드를 가려 집중력과 순발력을 요구하는 뉴스포츠이다.

* 장애아동 프로그램 활용법: 성 쌓기, 스택킹 + 체력활동 등으로 집중력과 순발력을 향상시킨다.



3) 티볼

티볼은 전문적인 장소나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야구형 스포츠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다. 룰이 간단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완수해야 하므로 협동정신이 함양되고 정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티볼이란 전문적인 기술과 장소,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야구형 스포츠의 흥미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이다.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게임으로서 결과에 대한 기쁨이나 책임도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티볼은 안전한 공과 배트, 작은 경기장, 쉬운 기술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야구형 팀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야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도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티볼에 대해 알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생활체육의 종목으로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교재보기

종목동영상
보기

< 참고문헌 >

- 장애인 뉴스포츠 종목 개발자의 스포츠 참여 저해요인 연구, (2011 강경우)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체육수업을 위한 뉴스포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2008 김현우)
특수체육과 장애인스포츠, Josep P. Winnick 무지개사, ISBN 89-91613-45-4
특수체육 이론과 실기, 장명재·김경숙·장경호·최원현 공저, 태근ISBN 89-7753-085-7

<사이트>

한국뉴스포츠협회 <http://www.newsports.or.kr>

아동의 상호작용 하는 방법과 장애 영역별 학습특성



팀 명	교육재활 2팀
일 시	2014년 11월 18일 ~ 28일
담 당	이제현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부모교육 >>

- 아동의 상호작용 하는 방법과 장애 영역별 학습특성 -

※ 시각장애아동의 학습특성 ※

1. 지능

지적능력은 일반 아동과 큰 차이가 없으나 지적구조에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통합 능력이 부족하고, 표면적인 이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높은 편이다. 추상적인 문제의 접근을 구상적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어휘의 이해 정도가 지체되어 있다. 그리고 수리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

2. 개념발달

인지발달은 정안아동과 같은 단계를 거치나 그 속도가 느릴 뿐이다. 선천적이거나 영아기에 시각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정보수집체계에 손상을 입게 되므로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사물의 영속성, 인과관계, 목적과 수단의 관계 등과 같은 개념을 습득하는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신체 개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준거체제로 자신을 투사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공간개념발달에 어려움(공간경험에 의해 각인된 공간처리전략이 부족)을 겪는다.

※ 청각장애아동의 학습특성 ※

1. 학업성취

지적능력이 정상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학업성취는 지체되어 나타난다. 읽기 능력은 4~5학년 수준, 산수도 5학년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듯 학업 성취가 지체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농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말을 가르치는 데 보다 많은 비중을 둔다. 둘째, 구화교육위주로 교수하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청각장애아동들은 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다. 셋째, 교사가 수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넷째, 구어와 수화체계의 이분법적인 접근 때문이다.

2. 학업성취

학력격차가 적은 편이며 따라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 심리교육적 평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검사지가 아직 없

다. 곧 시각장애인용 검사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안자용 검사 중에서 언어성검사를 주로 해야 한다.

- 개념발달 : 청각 및 촉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보를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는 시각이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시각이라는 감각

외의 청각과 촉각이라는 감각에 의존하여 학습을 한다.

- 말과 언어 :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하다.

- 학업성취 : 시각 자료를 학습하기 어려워 이들은 점자로 된 자료를 이용한다.

※ 정신지체 아동의 학습특성 ※

1. 고전적 조건형성 학습

고전적 조건형성을 예시하는 전형적 실험은 Pavlov(1927)에 의해 행하여졌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단순한 고전적 조건형성에 관한 실험으로서 지능 및 정신연령 수준에 따른 대상아동의 성적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신지체 피험자와 비지체 피험자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지체인과 비지체인을 비교한 대부분의 단순한 고전적 조건형성의 연구는 동일한 결론 즉, 지능지수가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 변별학습

이것은 피험자에게 두 가지 자극을 제시하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작적 조건형성의 한 가지 변형된 형태이다. Zeaman과 House(1966)는 동일한 정신연령의 정신지체아동과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18개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어렵고 복잡한 식별문제에서는 정상아동이 정신지체아동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았으나, 쉬운 문제에서는 두 집단 간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정신지체아동인 피험자는 변별학습에서 학습률이 낮다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학습속도는 일단 유관차원에 주의를 기울이면 정상아동의 학습속도 만큼이나 빠르기 때문이다.

Jensen(1963)은 여러 사회, 경제적 지위의 가정 출신의 정신지체아동, 평균아동 및 우수아동들에게 동일한 새로운 학습상황을 만들어 어느 스위치를 누르면 표시판에 있는 12개의 기하도형에 파란불이 켜지는가를 학습시켰다. 그 결과 학습 성취도는 우수아동, 평균아동, 정신지체아동 순이었다. 그런데 정신지체아동 집단 내에 의외의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4명의 정신지체아동이 모든 검사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전체 중에 2명의 가장 빠른 학습자 중 1명이 정신지체아동으로서 그의 지능지수는 65였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정신지체아동들의 성적은 학습이 가장 느린 학습자로 드러났다. 이 같은 특수한 학습과제에 관한 한 어떤 정신지체아동은 그 과제에 요구되는 특수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주의집중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과제에 일차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주의 집중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복잡한 과정이며, 이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학습자극에 대한 주의집중의 선택성, 주의집중의 시간 및 주의집중의 범위에 관해 이루어졌다. 정신지체아동의 주의집중 특성에 관한 연구는 Zearman과 House(1963, 1979)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신지체아동은 비지체아동에 비해 필요한 학습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자극의 변별)이 어렵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으며, 주의집중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자극에 자발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육의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주의집중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지체아동의 교사들이 첫째, 자극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둘째,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셋째, 과제에 대한 주의를 흐뜨리게 할 수 있는 이상한 자극을 제거하고, 넷째, 과제에 주의를 집중할 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4. 정보의 조직

학습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면 필요한 경우 그것을 재생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정신지체아동은 비지체아동에 비해 저장과 재생을 위한 투입정보의 조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나중의 재생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결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군화전략과 중재전략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군화란 예컨대, 항목들 간의 유사성에 따라 지각하기 쉽도록 묶음으로 배열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Spitz(1973, 1979)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을 때 정신지체아동이 비지체아동보다 더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

5. 기억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능력을 기억이라고 하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정신지체아동의 학습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가장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구된 영역이기도 하다. 과거의 기억연구는 자료를 단순히 암기함으로써 기억하는 수동적인 절차로 간주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암기주체가 능동적인 정보처리자로서 자극정보를 의미 있는 요소로 변환시켜 기억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게 되었다.

기억에 관한 정보처리모형들은 정보자료가 여러 상이한 형태의 저장절차를 거치며 각 저장형태는 상이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정보는 감각등록기에 먼저 부호화되며, 매우 짧은 시간 동안(0.25~2초) 자극의 실제적 특징을 지닌 영상적 기억 흔적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자료는 대부분 상실되고 그 일부만 제한적으로 단

기 기억에 몇 초 동안(보통 1~15초) 기억된다. 또 이것들은 신속히 잊어버리거나 그 중의 일부는 장기기억으로 전이되며, 장기기억에서는 자료가 의식의 세계로 오랫동안 저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음악치료기법을 활용한 장애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팀 명	사회심리재활
일 시	2014년 10월 28일(화) 10:00~11:30
장 소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음악치료기법을 활용한 장애자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

1. 음악치료란

□ 음악치료란?

음악 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rehabilitation) 및 유지(maintenance)하며 향상(habilitation) 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음악 치료사가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음악치료의 기본전제

음악치료는 음악을 치료의 도구로 접근하므로 음악이 치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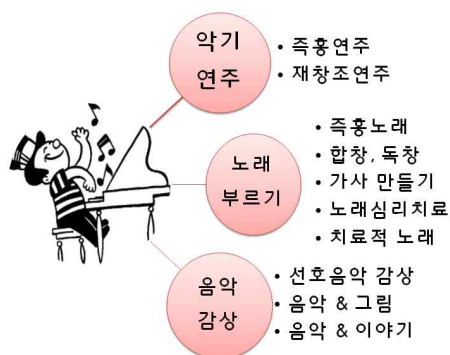
- 1) 음악성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 2) 음악적 환경에서 보인 행동은 음악 외적 환경에 전이된다.
- 3) 음악에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루는 힘이 있으며 심미성을 갖는다.

□ 음악치료와 음악교육

음악치료는 음악이라는 순수 예술을 치료의 목적으로 응용하는 분야이며 음악적 결과물 보다는 음악을 만들어 가고 경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음악치료에서는 음악적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기능적 변화를 포함한 목표들을 이루고 이러한 변화들을 음악 외적인 환경에 전이시키는데에 목적을 둔다. 예를 들어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주를 통해 적절한 표현력과 통제력을 충분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충동적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음악교육은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시간과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합주 활동시에 박자와 리듬패턴을 정확하게 맞춰서 연주하여 하나의 보여지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음악치료활동



2. 의사소통이란?

□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이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정보와 이해가 전달되는 과정으로서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실, 감정, 태도,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구두와 문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표정, 쳐다보기, 몸짓, 접촉하기, 신체 움직임 등이 있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 의견, 감정을 교류하여 공통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 의사소통기술과 발달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문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행동 또는 간접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비언어적, 특히 얼굴 표정이나 강세, 억양 등이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이며 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생활습관이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자녀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있고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녀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한다.

특히 의사소통을 위한 단서를 명확하게 주지 못하는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일관된 반응을 하지 못하므로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녀에게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 지시를 반복해서 하게되고 소통하지 못해서 일방적이며 직접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혹은 비판적인 말과 간접적 명령을 하고 통제하며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녀에 맞게 적합한 소통의 방법을 찾아서 자녀의 생각,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자신은 어떤 유형인가를 평가해볼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1)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개방형은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자녀의 메시지를 공감하고 반영해주며 경청하여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제시하는 의사소통이다. 문제

형은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비난적인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2) 나-전달법(I-message)와 너-전달법 (You-message)

나-전달법(I-message)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생각과 느낌, 입장을 자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정직하게 개방하도록 돕는다.

너-전달법(You-message)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령, 경고, 설교 등으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유형으로 부모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 부모-자녀간에 이렇게 소통하면 안된다 - 역기능적 의사소통

1) 비난하면 안된다.

자녀에게 ‘너는-’식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로 시작하며 자존심을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인 판단, 호통식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2) 방어하면 안된다.

부모의 책임을 부정하고 변명하며 자녀를 탓하지 않는다.

3) 답을 제한하는 질문을 하면 안된다.

자녀가 충분히 말할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 선택하여 답을 하게 대화를 유도한다.

□ 부모-자녀간에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 기능적 의사소통

1) 공감적 이해를 해야 한다.

자녀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2)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자녀의 생각을 부모의 주관적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주의 깊게 잘 들어주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3)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준다.

자녀를 판단, 비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드려준다.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시선을 맞추고 자녀를 인간으로 존중해준다.

4) 자녀에게 자기개방을 한다.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 감정, 의견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며 긍정적인 감정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3. 의사소통을 위한 음악의 사용

□ 소통적 매개로서의 음악

소통을 위한 매개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게 위

한 수준에서는 자녀의 표현 언어 발달 정도에 따라 발화 가능한 정도의 문장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자녀의 노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언어표현과 소통을 시도한다.

둘째, 자녀의 감정과 만나게 하기 위한 수준에서는 음악이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게 도와주고 타인과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음악은 비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감정과 의미를 담아내고 음악을 통해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면서 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을 통한 소통은 자녀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부모는 자녀의 음악에 대한 반응과 행동을 통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주며 소통할 수 있다.

□ 음악을 통한 자녀와의 소통 방법

1) 아동과의 언어적 소통을 위한 노래를 활용

노래의 가사가 전개하는 의미와 참여를 통해 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사를 통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상황을 계속적으로 다르게 제시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자극해야 하므로 노래의 가사를 적절하게 개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시> ‘숲속 작은집 창가에’ - ‘문두드리며 하는 말’ 가사를 ‘배고파서 하는 말’, ‘화가 나서 하는 말’로 개사하여 상황에 대해 제시한 후 아동에게 소통가능한 말로 노래하도록 활용한다.

Soprano
숲 속 작은집 창 가 에 작 은 아 이 가 섰 는 데

S
토 끼 한 마 리 가 뛰 어 와 문 두 드리며 하 는 말 살 려 주 세 요

S
작 은 토 끼 야 들 어 와 편 히 쉬 어 라

2) 아동, 청소년의 표현유도를 위한 악기연주를 활용

음악은 비언어적 표현 매체로서 감정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소극적인 성향 때문에 자기표현을 하지 못했던 아동에게 음악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예시> ‘오늘나의 기분은’ - 악기로 연주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게 한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ree voices: Soprano, Alto (S), and Tenor (S). The music is in 4/4 time. The lyrics are in Korean.

Soprano: () 이 행 복 해(악기) 너 무 나 즐 거 워(악기)

Alto (S): 음 악 도 하 고 노 래 도 하 고 악 기 도 연 주 했 지 요

Tenor (S): 친 구 와 함 께 이 야 기 하 고 즐 겹 게 놀 았 죠 예 |

3) 청소년과 감정교류 및 소통을 위한 대중가요 활용

최신 유행가요 중에서 감정을 다루는 노래들을 선곡하여 함께 부르고 가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본다.

예시> 커피소년 ‘상처는 별이 되죠’ 노래를 함께 듣고 ‘제일 좋은 가사의 부분이 어디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악을 주제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시도한다. 혹은 가사의 내용을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개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상처투성이 눈물쟁이 절망투성이 외로쟁이 그대에게 꼭 말하고 싶은 하늘의 비밀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눈물흘린 그 만큼 더욱 빛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아프고 아픈 만큼 더 높이 빛나죠
--

4.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잘 아는 노래의 가사에 넣어 표현하며 소통을 시도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노래(ex.자장가)나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에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개사하여 넣어 불러주면서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며 소통을 시도한다.

예시> ‘LOVE’노래에 부모-자녀를 서로 칭찬하는 가사로 개사하여 서로에게 불러준다.

법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다양한 사례소개를 통하여 부모들이 쉽게 치료적접근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음.
- 실제 음악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습득할 수 있었음.

②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모교육의 대상을 아동~성년으로 통합하여 교육의 대상과 접근방식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추후 교육진행 시 성인,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개별적인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 부모교육일정이 복지관 사정으로 인하여 1~2회 연기되었음. 복지관 연간일정 확인을 통하여 계획대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함.

별첨1. 사진자료



노무교육 (자녀의 취업상황에 대한 Q&A)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서면교육

노무교육(취업상황에서의 궁금증 Q&A)

노무법인 서해 김태호 공인노무사

I. 급여보장

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체사정(비수기 및 우천 등)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적게 근로했을 경우 급여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이미 1일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에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사업장의 사정상 근로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하면 됩니다.
2.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지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네,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맞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관할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곳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만 받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되나, 무료다보니 공단 직원이 매우 수동적이어서 관련 서류 등의 준비는 개인이 해야 하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II. 근속 인정

4.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장애인은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가 상향조정이 되고 있으나 장애인근로자는 3년째 급여가 동결일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급여의 지급 항목에서의 차별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장

애인관련 법으로도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급여 지급 수준에 대한 차별은 사업주의 경영권에 밀접이 관련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업무 난이도 및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합리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보장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Ⅲ. 계약 기간

5-1.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전 재계약을 통해 연장한다.’ 혹은 ‘근무기간은 계약기간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고는 합니다. 계약서 상 명시된 기간이 지난 후 특별한 합의 없이 근로가 지속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위 민법 제66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와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한 태도 등 참작)이 지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아래 제660조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간제 계약인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가 아니므로 제660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사용자의 해지통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5-2. 위의 상황에서 특별한 재계약 과정 없이 근로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연장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면 상으로 연장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므로 사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합리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하

며, 그렇게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부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 기타 5-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 근무기간을 기억하여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 물론 근로수령의 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계속 고용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향후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도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6.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A사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측의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2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시킨 후 1~2주 정도 쉬게 한 후 다시 고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가 숙달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회사의 입장과, 1~2주에 대한 보상도 없이 회사의 입장에 따라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지만 재취업에의 부담으로 인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입장이 상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주 정지기간 전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전후 기간을 모두 합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물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IV. 연차휴가

7.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나요?(ex :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8. 연차가 발생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권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1년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사용촉진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중심 개인재무설계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4. 12. 14
장 소	간석동 벨라오스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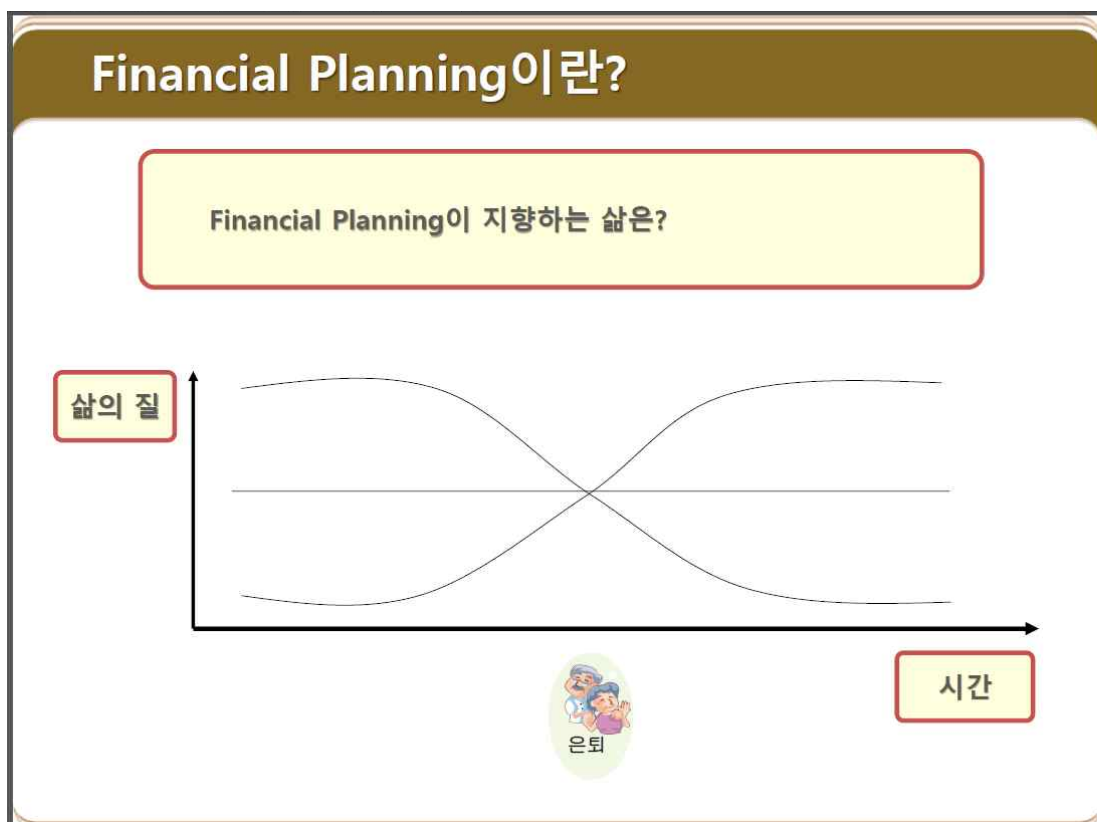
사회초년생 중심 개인재무설계

포도재무설계 표윤봉

■ 달라지는 세상

- 1) 급속한 고령화 진전 시대
- 2) 저금리 기조 장기화 시대
- 3) 저출산 시대
- 4) 인구감소 시대 (경제활동인구 감소)
- 5) 불확실성의 시대
- 6) 복잡, 다양성의 시대
- 7) 연결의 시대
- 8) 정보의 시대
- 9)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시대

■ Financial Planning이란?



▣ 저축, 투자의 필요성

저축, 투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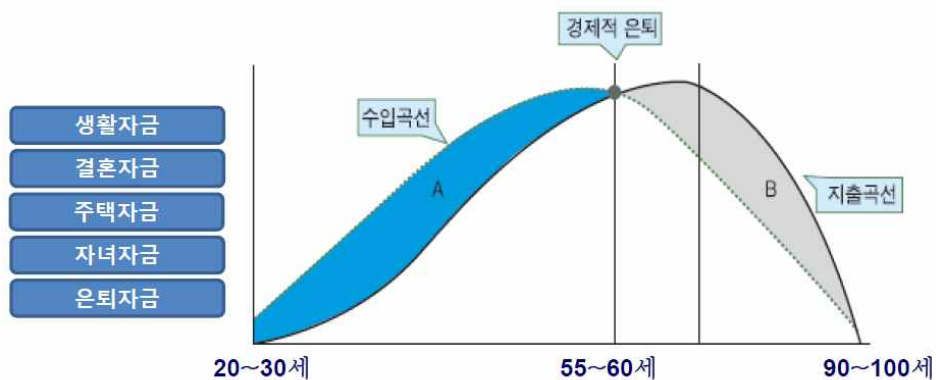
Life Cycle의 변화

Yesterday

Now

소득 $\neq$ 소비

저축, 투자의 필요성



■ 장애인 가족의 재무설계 핵심 고려 사항

- 1) 장애인 부양 문제와 더불어 재무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 플랜을 모색한다.
- 2) 재무계획 수립 시 정부 등 복지혜택을 고려한다.(예, 발달장애인법)
- 3) 부모 생존하지 않을 시의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 4)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장애인 (장애인 부모)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다.
- 5) 우리 자녀를 위하여 장애인 부모의 단결된 힘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행동한다.

■ 스스로 해보는(DIY) 행복재무설계

- 1) 행복을 위해 앞으로 이루고 싶은 재무목표를 우선순위 별로 체크
 - 결혼자금설계
 - 주택마련계획
 - 투자설계
 - 은퇴자금설계
 - 위험설계
 - 자녀교육자금설계
 - 증여,상속설계
 - 기타
- 2)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 생각하는 필요 준비기간과 금액 적기



3)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 나의 재무상태 바로 알기

재무상태 확인하기		현금흐름 확인하기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와 순수자산	지출	수입
현금/예적금/CMA	신용카드 잔액	저축 적금 /펀드등	근로소득
투자자산 (펀드/채권/연금)	자동차할부잔액	연금(국민,개인)	본인 배우자
부동산자산 (상가/토지 등)	주택대출잔액	고정지출 보험료(국민건강/개인)	부동산 임대소득
사용자산 (자동차/주택)	이외 부채 잔액	임대료(월)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자산소계	부채소계	기타 (대출상환금/공과금등)	수입합계
순자산 (자산소계 - 부채소계) =		A 고정지출 소계	수지차(지출합계 - 수입합계)
		변동지출 생활비/교육비	/
		교통/통신비	/
		기타(경조사/외식 등)	
		B 변동지출 소계	
		지출합계(A+B)	

4) 나의 재무목표와 현실과의 차이 알아보기

■ Financial Planning 실행전략

1) 현명한 돈 관리-지출 관리

- 돈 관리의 주체가 되라!
-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자! (예산수립의 중요성)
- 선 저축, 후 지출하자! (저축 시스템 수립 중요)
- 기록하고 평가하자!
- 목표를 분명히 하자!
- 목표에 따라 저축 방법을 달리 하자!
- 수입의 ()%를 저축, 투자하자!
- 자동 저축, 투자 시스템을 수립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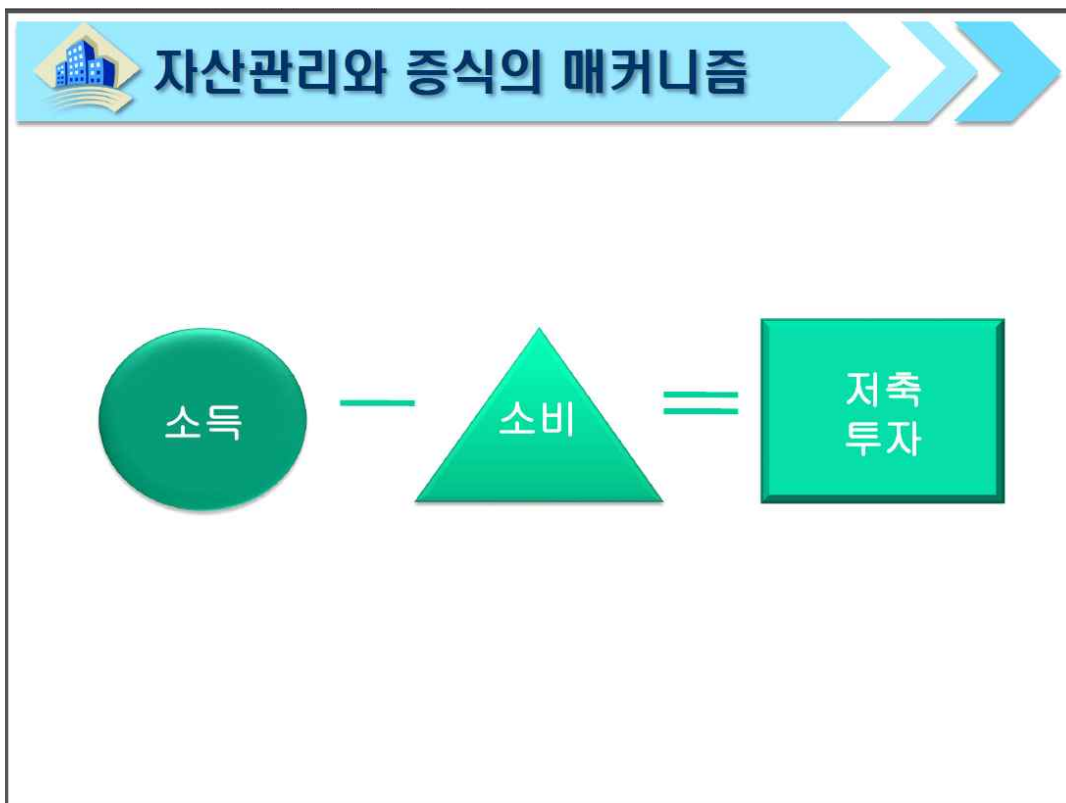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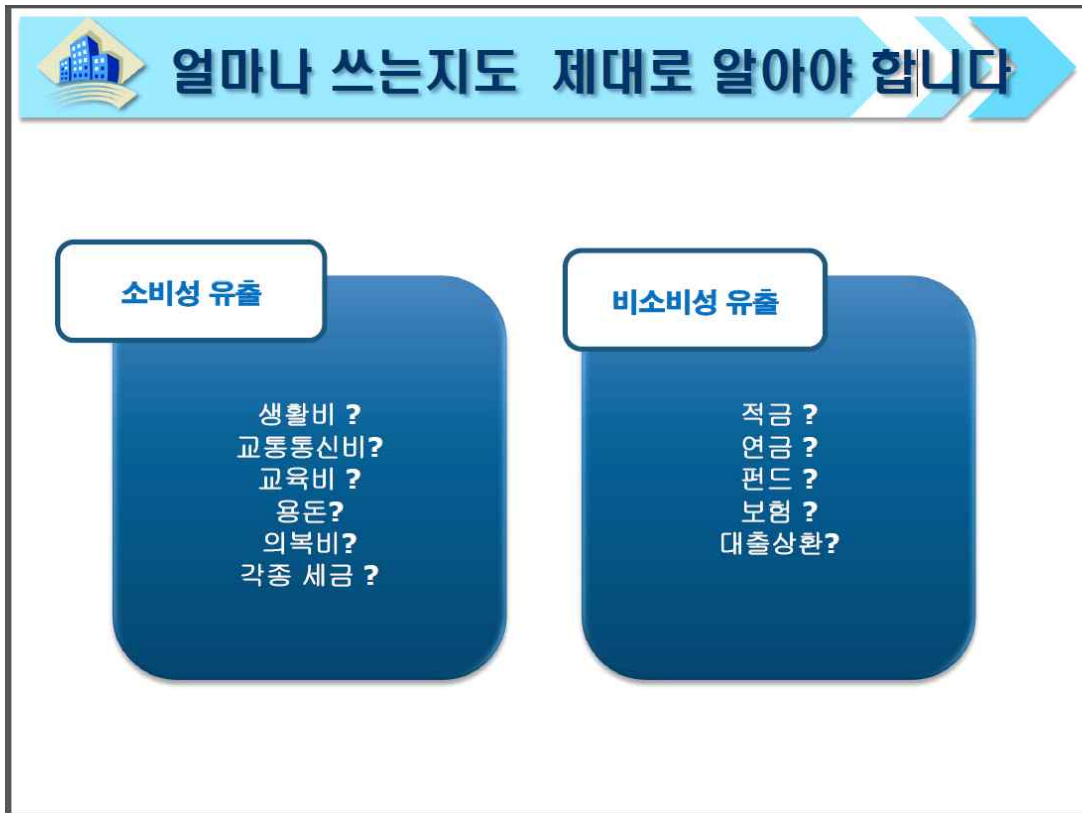
2) 재무설계

- 구체적 목표 설정(필요한 자금 vs 원하는 자금)
- 자신의 현 재무상황 파악
- 계획 수립(재무목표의 우선순위와 시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계획 실행(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의 실행)
- 정기적 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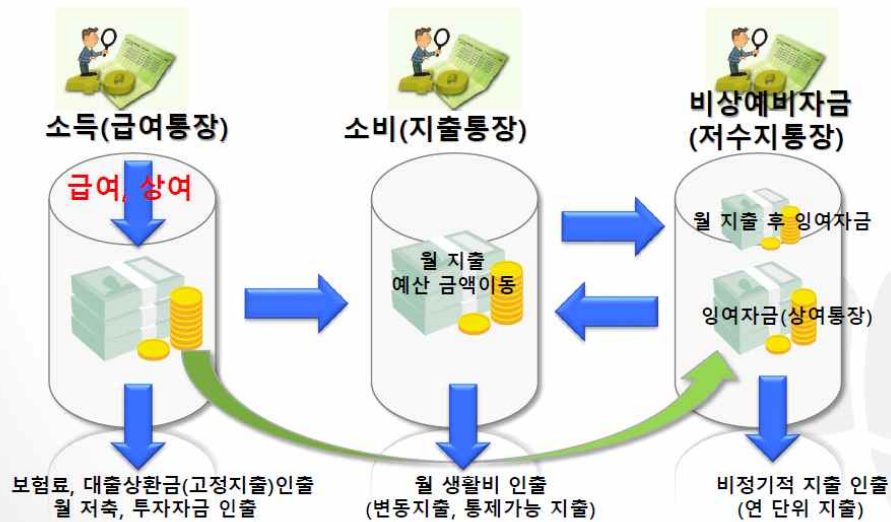
3) 재테크 VS 재무설계

- 재무설계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4) 얼마나 쓰는지 제대로 알기



●●● 효율적 통장관리



장애인 금융 세제 지원

보험료	소득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추가공제 100만원 가능
연금보험	증여세 면제	4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보험료 불입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음
	장애인연금보험	사업비 저렴, 환급금 우대
신탁	증여세 면제	5억원 이내 증여세 면제 -증여받는 재산 전부를 신탁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의 수익자 -신탁기간 장애인 사망시까지
은행상품	생계형저축	비과세 혜택
	행복가득 희망적금 새희망적금	우체국, 기준금리 + 5% 신한은행

여러분의 투자는?

- 단기투자 : 안정적 or 공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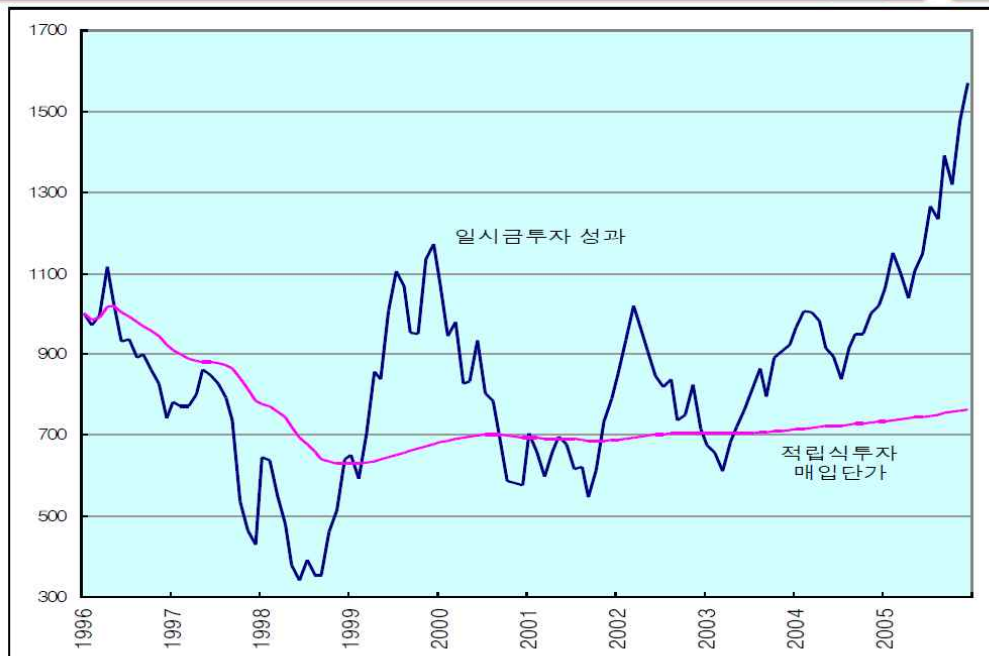
안정적

- 장기투자 : 안정적 or 공격적

공격적



10년간 주식에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Copyright©2006 FNet, All Rights Reserved.

2014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4년 1월 9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4년 열린일터 사업 일정

날 짜		내 용
1월	6일	시무식
2월	—	동아리활동 시작(2주, 4주)
3월	28일	1차 등산활동
4월	16일	장애인문화축제
5월	3일	비루고개축제
	16일	데이캠프
	30일	가정의 달 행사(성모성월 미사)
6월	5일	2차 등산활동
	12일	기관견학
7월	28일-8월 1일	하계휴가(예정)
8월	—	—
9월	26일	3차 등산활동
10월	8일	휠체어마라톤대회
	17일	4차 등산활동
	23일-24일	가을여행
	—	소방서 연계 합동 소방훈련
	—	독감예방접종
11월	—	건강검진(보건소 연계)
12월	17일	남동송년예술제
	26일	가족송년회
	29일 -1월 2일	동계휴가(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김형범, 김상준, 김영희, 강웅혁 심재홍, 김훈범, 홍미리, 이해민 조상환, 이선영 (10명)	남 빛, 김필두, 이용국, 진은혜 문은선 이상복, 김성준, 백광호 김동하, 한운철 강병철, 조준희 이요셉, 양세정, 하은미 박찬혁 최성욱, 황정하, 임선영, 조국태 (20명)

2014년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명단

프로그램명		이용인 명단
성교육	근로자	전체 근로자
	훈련생	남빛, 한운철, 이상복, 조준희, 임선영, 김성준, 강병철 이요셉
사회기술 훈련	1반	진은혜, 한운철, 이용국, 김동하, 김성준, 임선영, 문은선 하은미
	2반	남 빛, 조국태, 김필두, 최성욱, 이상복, 강병철, 이요셉
	3반	박찬혁, 황정하, 양세정, 백광호, 조준희
운동	댄스교실	김동하, 한운철, 문은선, 진은혜, 박찬혁, 남빛, 이용국 임선영, 조준희, 이상복
컴퓨터 교육		양세정, 박찬혁, 최성욱, 임선영, 조국태
비즈공예		김성준, 문은선, 남 빛, 이상복, 김필두, 김동하, 진은혜 조준희, 최성욱, 임선영, 이용국, 백광호
자판기 관리	근로자	김형범, 이선영
	훈련생	남빛, 양세정
미술 치료	근로자	강웅혁, 홍미리, 이선영
	훈련생	김성준, 한운철, 조준희
근로자 기본교육		전체 근로자
지역사회적응훈련 인권교육, 안전교육 건강교육		전체 이용인
동아리활동		신청자
해맑음땀방울 농장		신청자 중 평가를 통해 선정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 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 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들 중 6개월 이상 이용하였으며 ‘근로자 선정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10명을 선정한다.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별표 1)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 4 장 복 무

제9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35분(09:00~17:30)으로 한다. [개정 2013.1.1]
단, 추가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쌍방의 합의 하에 근무시간을 변경 또

는 연장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55분 (10:25~10:40, 11:40~13:00, 15:00~15:20)으로 한다. [개정 2013.1.1]

제11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시작 시간(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종료 시간(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3.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2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2조의 1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3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4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기를 정하여 정기휴가를 일괄적으로 여름휴가 1주일, 겨울휴가 1주일을 실시한다.

제15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특별휴가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 수에 산입한다.

1. 결혼 : 본인(7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1일)
3. 사망 : 배우자(7일), 부모, 자녀(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1일)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휴가, 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시행 2013. 2. 2)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6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3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단, 3일 이상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8조 (임금지급 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 [개정 2014.1.1]
2. 임금은 월 15만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90% 미만 출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

급한다. [개정 2014.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신설 2014.1.1]

제 6 장 종 결

제19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 종결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근로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3.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이용인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 되지 않았을 때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0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1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모회의

제22조 (부모회의) [신설 2013.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4조 (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5세 이하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 및 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 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 (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 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초기면접과 직업평가 후 재활계획회의 결과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다. 필요 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타기관의 동일한 진단(6개월 이내)을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 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1. 이용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중 이용기간이 5년 초과된 자
3.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 (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별표 1)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 (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 (훈련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

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3)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 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월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개정 2014.1.1]

2. 훈련수당은 월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90% 미만 출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1]

3. 훈련생이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훈련수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신설 2014.1.1]

제 3 장 복 무

제12조 (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란,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훈련시간은 1일 6시간 35분(09:00~17:30)으로 한다. [개정 2013.1.1]
3.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50분(10:25~10:40, 11:40~13:00, 15:00~15:20)으로 한다. [개정 2013.1.1]

제14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시작 시간(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종료 시간(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3.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5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1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6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

제17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기를 정하여 정기휴가를 일괄적으로 여름휴가 1주일, 겨울휴가 1주일을 실시한다.

제18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특별 휴가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 수에 산입한다.

1. 결혼 : 본인(7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1일)
3. 사망 : 배우자(7일), 부모, 자녀(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1일)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휴가, 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시행 2013. 2. 2)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 1]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 되지 아니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9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3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단, 3일 이상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1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기간 만료

훈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강제 종결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4.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훈련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훈련생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제22조 (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3조 (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본 시설 이용 중 특별한 사유(이용인 및 보호자의 입원 혹은 수술, 보호자의 출산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종결을 하고 우선 대기(1순위)를 신청 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모회의

제25조 (부모회의) [신설 2013.1.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로계약서

본 계약서는 열린일터(이하 “갑”이라 칭함)와 근로장애인(이하 “을”이라 칭함)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 있어 본 시설이 정한 약정 및 준수 사항을 적용하여 서약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로장소 : 열린일터 작업장
3. 근로조건
 - 1) 근로일 :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 2) 근로시간 : 09:00 ~ 17:30 (1일 6시간 35분)
 - 3) 휴게시간 : 1일 1시간 55분 (10:25-10:40, 11:40-13:00, 15:00-15:20)
 - 4) 휴 일 :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시설이 정하는 휴일
 - 5) 휴 가 : 보호고용 운영지침에 준한다.
4. 임금
 - 1) 매월 150,000원의 정액으로 지급하며 상여금 및 기타 제수당은 없음.
(90%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
 - 2)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3)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
5. 준수사항
 - 1) “을”은 열린일터 보호고용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로에 임한다.
 - 2) “을”은 근로 중 안전과 건강 등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파기
 - 1) “갑”은 “을”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성실히 근로하지 않거나 보호고용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7. “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해서 6항 이외에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본 계약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함을 약속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열린일터 보호고용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장 명 : 열 린 일 터

대 표 자 : 김 지 혜 (인)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담방서로 23

을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별표 2】

훈련계약서

본 계약서는 열린일터(이하 “갑”이라 칭함)와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이하 “을”이라 칭함)의 훈련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 있어 본 시설이 정한 약정 및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서약하고, 훈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훈련장소 : 열린ilter 작업장 및 프로그램실
3. 훈련조건
 - 1) 훈련 일 :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 2) 훈련시간 : 09:00 ~ 17:30 (1일 6시간 35분)
 - 3) 휴게시간 : 1일 1시간 55분 (10:25-10:40, 11:40-13:00, 15:00-15:20)
 - 4) 휴 일 :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시설이 정하는 휴일
 - 5) 휴 가 :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한다.
4. 훈련수당
 - 1) 매월 5만원의 정액으로 지급(90%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2)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2) 지급방법 : 훈련생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
5. 준수사항
 - 1) “을”은 열린ilter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다.
 - 2) “을”은 훈련 중 안전과 건강 등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파기
 - 1) “갑”은 “을”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성실히 훈련하지 않거나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7. “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해서 6항 이외에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본 계약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함을 약속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열린일터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장 명 : 열 린 일 터 을 성명 : (인)
대 표 자 : 김 지 혜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담방서로 23 주소 :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 이해하기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4년 7월 3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이해하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 성·가정 폭력 상담센터 김영미

1.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 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형법의 모든 성범죄는 물론이고, 공공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아청법)가 폐지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수 후에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2.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입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또는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예전에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가 형법에도 신설되어 일반 성인이라도 강간 행위에 준해 중하게 처벌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사람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정처벌도 가능하다.

3.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 대상

그동안 별률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대상을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기존 여자는 강간이고 남성은 강제추행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모두 강간으로 형법에 의거 3년 이상

의 형을 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13세 미만은 성폭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되고 13세 이상은 아청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4.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 앞으로는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범죄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 처벌대상 공공장소 :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목욕실 또는 탈의실로 특정

5. 강간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 없음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죽을 때까지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관한 처벌 강화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이외에도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한다.

예) 함께 거주하는 5촌 당숙이 강간을 했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 처벌되어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

7.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입었던 옷 그대로 씻지 말고 병원으로 간다.

(남) 비뇨기과, (여) 산부인과

72시간(3일)내 응급피임약 복용(처방전 필요 없음)

2014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4년 2월 24일 16:00-17:30
담 당	김 은 숙
장 소	별관 3층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4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주간보호사업은 중증의 장애인들에 대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손실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부모들에게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1) 프로그램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7:00까지 진행(송영서비스 시간 제외)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09:00~13:00(토요문화체험) 진행

2) 세부프로그램

- 이용인 정규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9:00-9:30	Tea Time/ 독서 지도					토 요 문 화 체 험 (월1회)
9:30-10:00	조희 및 스트레칭					
10:00-10:50	*종이접기	생활미용 관리	미술활동	*생태교육 /인권교육	성교육	
10:50-11:00	휴식 시간					
11:00-11:50	예절교육	음악활동	펜글씨활동	생태교육 /시청각활동	*방송댄스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요가	인지학습	등산 / 배드민턴	컴퓨터교육	*요가	
14:00-15:00	요리활동/ *클럽활동	헬스배드민턴/ 클럽활동		헬스/ 배드민턴	*농장체험/ 수중운동/지	
15:00-16:00	*컴퓨터교육	간식시간		간식	역사회 시설이용	
16:00-16:40	간식 / 청소					
16:40-17:00	종 례					

- 1) *표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임
 - 2) 클럽활동은 도예체험, 비즈공예, 네일아트, 볼링으로 이용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여 진행됨 : 2013년도 하반기 욕구조사 결과 반영
 - 3) 월 1회 : 지역사회시설이용 및 지역사회참여활동 실시
 - 4) 년 3회 : 분기별로 각종행사(봄나들이, 일일캠프, 남동송년예술제)
 - 5) 년 6회 : 체지방측정(4회), 독감예방접종(1회), 건강진단(1회)
 - 6) 년 4회 : 구강교육, 비만교육, 위생관리훈련
 - 7) 년 2회 : 상하반기 소방교육
 - 8) 년 5회 :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활동
 - 9) 년 4회 : 상하반기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보호자 욕구조사
 - 10) 신규프로그램 : 요가, 예절교육
- 이용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 부모상담- 수시
 - 부모교육- 년 4회 실시
 - 부모회 모임- 년 4회 실시
 - 가족여행- 10월중(1박 2일)
 - 가족송년모임- 12월 중 실시되며, 가족 중 1인 참석하여 본 센터 사업보고 및 시상식 진행

제 6 장 부모회

제16조 (부모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 모임을 부모회라 칭한다.

제17조 (부모회 및 부모교육)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이용인의 부모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실시하는 부모모임이나 부모교육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이용료

(1) 적응기간 이용인

- 식대는 별도로 날일 구입하여 사용 1일 : 2,500원
- 적응기간에는 정규이용인의 월이용료 기준으로 날일 계산하여 납입

(2) 정규 이용인

-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당월 20일까지 입금

(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50% 감면)

(3) 식대는 월 단위로 50,000원 금액을 현금을 납입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5일까지 입금

(4) 2014년도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사회 적응 훈련 활동비	방송댄스 이용료	8,500원	월4회×2,125원
	클럽활동 재료비 및 강사료	15,000원	월2회×7,500원
	수영 사용료	2,000원	월2회×1,000원
	통합활동비	10,000원	
	토요문화체험비	15,000원	월1회×15,000원
	지역사회시설이용비	6,000원	월1회×6,000원
	농장체험비	5,000원	월1회×5,000원
	생태체험비	6,000원	월1회×6,000원
	기타활동교구 교재비 (펜글씨, 음악활동, 생활미용관 리, 인지학습 등)	18,820원	월1회×18,820원
	소계	86,320	
행사 활동비	나들이, 일일캠프	8,400원	2회×50,000원≒12
	송년예술제	7,080원	1회×85,000원≒12
	가족송년모임	6,200원	1회×74,000원≒12
	가족여행	22,000원	2회×130,000원≒12
	소계	43,680	
	기타운영비	—	
	총계	130,000원	

4) 환불

제14조 (환불)

1. 이용인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운영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상황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을 정한다. 즉, 15일 이전 종결 시에는 이용료 및 식대는 50%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종결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이용기간 : 3년(서비스 계약서 상단에 이용기간 날짜 명시되어 있음)

3. 서비스 종결 내용

운영규정 중 제 9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보호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인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인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대상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인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이 지날경우 자동종결 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팀 명	늘푸른동산
일 시	2014년 5월 9일(서면자료)
작성자	김은숙 사회복지사
담당자	김은숙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4.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들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 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친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

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나목 또는 라

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절차, 점검 대상 및 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

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지원방안



팀 명	늘푸른동산
일 시	2014년 12월 19일(서면자료)
작성자	김은숙 사회복지사
담당자	김은숙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지원방안

박인용/ 함께가는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장

1.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이란?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근래의 장애인 운동의 이념이자,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패러다임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삶에 대한

자기 통제¹⁾를 핵심으로 하는 자립생활 이념은 구미 장애인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면서 각국 장애인 지원서비스 및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자립생활 운동과 중증장애인 권리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자립생활 센터에 국비나 시비에 의한 공식적 지원들이 이뤄지면서 공적인 자립생활 지원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 100여개소의 장

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자립생활 운동과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 자립생활 운동의 성과로 부산시, 광주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 6개 시도와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자립생활운동 협의체에 의해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제정 운동이 추진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성동구, 중구, 강남구, 양천구 등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다수 자립생활센터와 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 발족하였다. 현재 성북구,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종로구 지역 등에서도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당사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은 발달장애인 ²⁾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환경에서 살아야 하며,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자기표현을 통해 삶을 즐기고 세상과 소통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립생활 운동 역사에서 발달장애

1) 미국자립생활협의회(NCIL)에서는 자립생활을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2) 발달장애인을 지적, 신체적 손상으로 아동기에 발달상의 장애를 나타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중복장애인 등을 포함한 범주로 본다. 북미에서 주로 발달장애인으로, 북유럽에서는 지적 장애인, 또는 학습적 장애인이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은 지적 또는 신체 손상으로 다음 3가지 이상의 기능이 저하된 이들로 22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 자기 돌봄(self care), 이해력(neceptive), 언어표현(expressive), 배우는 것(learning), 이동성(mobility), 자기결정(self direction), 독립생활(capacity of independent living), 자급자족(economic self-sufficiency).

인 자립생활 지원은 늘 논의였으며, 부모운동 진영의 참여도 거의 없었다. 일부 부모지원 단체나 복지기관에서 지적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까지 발달장애인을 대변하는 국내 부모운동이 복지서비스의 권리화와 사회통합(inclusion), 탈시설 자립생활 이념,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옹호운동(people first) 등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부모운동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강력한 권리운동,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권리 옹호,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아직도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가족연대주의’와 ‘시설보호주의’가 뿌리 깊게 관통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수립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³⁾. 이에 복지당국은 시설보호주의를 폐기하고 지역사회 통합, 자립생활 지원 정책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탈시설 기반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생활시설 거주비율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2,148,686명중 47,629명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비율이 2.2%인데, 발달장애인의 생활시설 거주비율은 20%를 자치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장애인 보다도 격리와 차별을 받는 장애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생활시설 거주 추정 장애인 47,629명중에서 지적, 발달장애인은 29,911명(62.8%)으로 추정되어 지적, 발달장애인 인구(149,041)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총 314개 생활시설에 21,70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2008년 서울시에는 38개 생활시설에서 3,3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파악되지 않은 시설을 고려하면 생활시설 거주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표 1] 장애인생활시설 인원(2007. 보건복지가족부)

구분		합계	생활시설(정원 : 24,834명)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증요양	장애영유아
전국	시설수	314	33	14	11	131	116	9
	인원	21,709	2,283	792	521	9,325	8,345	443
서울	시설수	36	3	3	1	11	16	2
	인원	3,218	258	170	52	973	1,668	97

3) 서울시의 경우, 2008년 11월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라는 장기정책을 내놓고 정책비전으로서 1)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 2)이용자 중심 3)재활 보다는 자립생활 중심 4)비장애인시설 통합이용 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립생활 체험홈과 그룹홈을 확대한다는 계획 외에는 기존 대형 생활시설을 해소하고 생활시설인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언급이 없어 여전히 시설보호주의로 평가된다.

최근 서울시에서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을 비롯해 생활시설내 재단의 비리와 시설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시설내 지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높은 사망률과 약물 오남용, 신체적 자유의 침해 등 인권의 사각지대로 입증되어 왔지만,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자립생활기반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에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야간 긴급외출이이나 긴급보호 상황시 일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과 장년기 장애인을 위한 영구 그룹홈 제도(매년 10개소씩 신설 운영한다는 계획) 외에는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발달장애인과 자립생활 이념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은 첫째로 60년대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소수자 시민권 확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분리는 차별이라는 급진적인 평등주의와 모든 소수자들도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념이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시발이 되었다.

미국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로버트(Edward Roberts)의 사례에서 보듯이 흑인 시민권 운동이념, 대학 민주주의 운동과 맥을 같이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학내 자립지원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들을 낳았다. 미국에서 대학내 이동권, 학습권 및 거주권 확보를 위해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었다면, 영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내에서 개인적이거나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료 돌봄노동자 배치를 요구하는 등 탈시설화를 이루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둘째로, 7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제기된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에 따른 탈시설화, 탈의료화 이념을 들 수 있다. 정상화는 뉴리에(Nirie)에 의하면 ‘모든 발달 장애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의료모델에 기초해 장애인을 정상으로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조건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울펜스버거는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며 방어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상화’ 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사회통합(inclusion), 권리 옹호(people first), 사회적 역할가치(social role valorization) 등의 이념은 특히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과 복지서비스의 핵심가치로 확인되고 있다.

탈시설 이념은 근대이후 시설보호주의가 낳는 비인간적 환경, 시설인권 문제, 시설병이라고 불려지는 ‘훈련된 무능력’ 등 광범한 문제가 공공연하게 드러남으로써 확고하게 정착되어 왔다. 시설 내 인권실태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성폭력, 감금 등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임소연, 2009). 군대와 같이 단체 생활을 이유로 동일한 일과시간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잔소리와 체벌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본인의 욕구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밖에 나가면 길을 잃을 것이라며 외출을 막고, 보

호자의 동의 없이 퇴소할 수 없는 처지를 지속적으로 세뇌시키는 등의 상황, 생활인 스스로의 자립생활 및 퇴소 의지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무능력을 학습하고 결국 시설병에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김용득, 박숙경(2007)은 지적 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에 대해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그룹홈, 자립홈 거주 지적 장애인보다 생활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 경험과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경험 차이가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응능력에도 차이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생활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은 집과 같은 보편적인 주거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보편적 주거가 얼마나 보편적인 욕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서방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탈시설 권리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운동은 ①탈시설화 운동(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②집과 같은 따뜻한 삶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운동(homelike setting) ③자기옹호 운동(self advocacy movement)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화 운동이 갖는 당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종인, 2004).

- 1) 시설 보호는 탈시설 보호 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 2) 대형시설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집과 같이 따뜻하고 개별화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3) 시설은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호관계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4) 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술(skill)을 개발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경험을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5) 시설에서는 비장애인과는 무엇인가 다른 기인한 점들(oddities)이 있다는 것을 영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6) 시설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능적인 삶으로부터 적응행동(adaptive behavior)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형시설에서의 거주는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문화예술 및 직업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보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과 같은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고, 결국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가 일차적 준거 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07년 방한한 미국의 탈시설 부모운동가 캐시(Cathy Ficker Terril)는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정부 운영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자(Closure of Government Operated Institutions and Building Inclusive Community Supports)’라는 강연에서 서방국가에서 이뤄진 38개 연구중 35개 연구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시설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더 좋아지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반드시 지역사회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변하였다.

“시설은 곧 차별이다. 시설은 사람을 분리시킨다. 시설은 사람들을 그의 의지에 반해서

감금해 놓는다. 시설은 사회참여에 대한 장벽이다... 시설폐쇄 결정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복지시설의 일자리 문제,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정치적인 것이다. 시설은 가정, 지역사회, 인간의 자유에 대해 반대되는 것이다...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셋째로 자립생활이념은 장애인의 자기선택권에 기초한 소비자 주권(Consumerism)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 선택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제공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은 자조운동에 기초한 동료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고, 장애인 당사자가 가진 경험에 기초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당사자 주체성, 당사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4)

3.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 사회적 모델의 한계

자립생활 운동은 전통적인 개별적 모델(의료 모델)에 대립하는 대안운동으로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으로 보고 손상을 치료하거나 재활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료 모델에서 탈피하려는 운동이었다.

기존의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을 다룬다면, 문제의 소재가 장애인 개인에게 있고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개인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되어 환자처럼 의료나 재활전문가에게 의존해야하는 존재로서 선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재활모델의 목표는 직업재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나 신체적 기능 회복이고, 이런 목표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ADL)의 향상 여부에 귀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5) 물론이고, 미국 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of 1990)6) 을 비롯해 각국의 법률에서 장애에 대한 주류적 정의는 WHO의 도식에 따른 장애의 의료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김도현, 2007).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데, 사회적 모델

4)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일본에서 소개된 용어로 국내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 운동에서의 당사자성, 전문가주의와 대비되는 당사자 주체성이라는 의미일텐데, 굳이 이념적 지향을 의미하는 ‘당사자주의’로 정착된 배경이 무엇일까? 토요타 마사히로(豊田 正弘)는 일본에서의 당사자주의를 ‘당사자 환상론, 즉 마이너리티운동에서 공동환상의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60~70년대 장애인 해방이념에 충실했던 일본 장애운동이 지금은 당사자운동이라는 논리 하에 배타적 권위주의로 변질되어 온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남병준, 2006).

5) 장애인복지법 제 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한다. 이는 병리학적 관점에서 장애의 형성 요인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한 개별적인 생활제약 요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개념은 우리사회가 장애에 대한 개인적, 비극적 정의를 공식화하고 있고, 그 사회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보상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미국 장애인법(ADA)은 장애를 ‘①주요 생활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 ②그러한 손상의 기록 ③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됨’으로 정의해 손상을 가진 것으로 잘못 분류되어 온 사람,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손상을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 믿은 결과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한다(조한진, 2006).

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배제와 불리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 운동 진영에서 제기되었는데, 영국 UPIAS(차별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 : 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은 WHO의 장애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거부하고, 대안으로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로 알려진 2단계 분류를 제시했다.

[표 2] UPIAS의 장애 개념

손상 (impairment)	사지의 전체나 일부가 없는 것, 또는 신체의 외형이나 기관, 기능이 결함을 가진 것
장애 (disability)	육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 현재의 사회조직이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주류적인 사회 활동에의 참여가 배제되고, 사회적 불리와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

자료: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London: The Macmillan Press.

UPIAS의 장애 개념은 영국 장애학자 올리버(Oliver)에 의해 ‘사회적 장애’ 개념으로 정립되었는데, 사회적 장애 개념에 따르면 손상과 장애는 별개의 문제이다. 장애는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로 만드는(disabling), 즉 불필요하게 사회활동 참여에서 소외시키거나 배제함으로써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다.⁷⁾

장애를 사회적 억압으로 정의 하면 장애인은 환경에 의한 개인적 희생자 라기 보다는 무지한 사회에 의한 집단적 희생자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개인적 보상보다는 억압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된 사회정책을 사용할 것이다(Oliver, 1990). 결론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정의만이 장애 당사자의 저항담론을 형성하며, 개인의 손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도 환경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 자립생활운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회적 모델이 가진 한계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제를 당연히 한다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장애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도 신체장애인만 염두에 두고 정신적 손상(mental impairments)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체장애인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자기결정에 대한 자유론적 접근이 팽배하여 지적장애인의 장애운동의 참여나 지적장애인의 자기옹호(self-advocacy)를 활발하게 전개하지 않았다. 이후 영국장애인단체협의회(BCODP)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모든 손상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넓혀졌고 이러한 개념은 세계장애인연맹(DPI)에 의해 채택되어졌다.

아무튼 장애를 사회 억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감각적 장애인의 경험에 치중하고, 지적 장애인의 피억압 경험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 지적 장애인과 관련해 사회적 통합을 주장하는 정상화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7) 근래 장애인을 people with disability, differently abled people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올리버와 같이 사회적 장애 개념을 지지하는 장애운동 진영은 장애를 만드는(disabling) 사회에 대응되는 용어인 ‘the disabled’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이성규, 2000).

다. 사회적 모델 지지자들은 전통적인 장애인 분리에 반대한다며, 신체적·감각적 장애인, 정신적·지적 장애 등 모든 장애인의 경험을 포함하는 장애운동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올리버도 자신의 장애이론에서 지적 장애인 (learning difficulties)이 직면한 사회적 억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다. 샤펠은 사회적 모델에서 지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주변화되고 은폐되었다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털어 놓고 있다(Chappell, 2006).

자립생활 모델도 비슷하다. 거번 데정(Geben Dejong)에 의하면 자립생활을 주장한 것은 신체장애인들이었고 그들이 처음 구상했던 자립생활센터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신체적 손상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당사자에 의한 선택과 통제가 정신적 손상이 있는 장애인에게까지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사회적 모델에서 손상과 장애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연구에서의 해방적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 지적장애인들에게는 많은 한계로 다가오듯이, 자립생활모델에서도 자립생활운동이 확대되면서 과연 전체 장애종별을 모두 아우르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어났다.

데정은 자립생활의 핵심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에도 원칙이 되어야만 한다. 첫째, 당사자가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와 혜택을 얻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 정치 및 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가 정리한 자립생활 모델에 자립생활 지원모델(IL Support Model)을 추가해 비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모델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3]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모델(Human Service Support Model)

항목	재활모델(RM)	자립생활모델(ILM)	지원모델(ILSM)
형태	분리(격리)수용	통합(사회통합)	선택적 이용
문제의 정의	신체적 결손, 직업훈련, 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부여와 협조의 부족	전문가나 가족에의 의존, 부적절한 시스템,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	전문가와 당사자 및 지원자 그룹의 상호 협력적 관계
문제의 위치	개인	사회(환경)	관계와 과정
관리의 주체	전문가	당사자, 이용자(소비자)	파트너십이 기본
정보의 취급여부	비밀공개 여부(부분공개)	공개(개인에게 공개)	공개(개인 관련자 포함)
시스템	복잡함	간단(단순)	간단(단순)
접근방법	전문적 기술적 접근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정상화, 사회통합, 자조 (Normalization & Social Integration, Self Help)
기대효과	ADL 향상, 직업훈련 가능, 신변처리 기능의 향상	Self Management, 사회적 가치의 향상, 사회개혁과 주민의식	사회통합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사회

*자료출처 : G. Dejong(1979, 1981), WID, Simi Litvak(1991), 정종화(2005) 재구성

자립생활 모델은 문제의 소재가 사회환경에 있고 사회개혁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통해 자립생활이 실천되고 자기관리와 사회적 가치의 향상을 가져오는 권리옹호, 소비자 주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자립생활 모델이 지적, 발달장애인에겐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지체장애인 당사자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자기 결정권인데, 의사결정능력이 충분치 않은 중증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존적인 자립을 통해 그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정종화, 2005).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자립생활의 지원모델’인데, 전문가와 당사자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중요시 한다. 전문가나 가족 등의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경우 당사자 주도권 담론 이전에 협력관계와 실천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립생활의 기본이념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이들에게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4. 발달장애인의 자기 선택권

장애인 당사자성을 가장 나타내주는 말이 당사자 주체성, 당사자 배제불가론으로 알려진 장애인 운동진영의 유명한 슬로건인 ‘장애인인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 일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 주체성은 발달장애

인에게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은 당사자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으며, 자기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누가 당사자인가? 특히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주체로서 갖는 당사자성에 대해서 재확인될 필요가 있겠다.⁸⁾

김진우(2009)는 아무리 어렵고,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는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는 발달장애인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부모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언해 주고 때로는 자신의 결정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조력적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부모는 후견인이 될 수 있어도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한진(2006)은 당사자 개념은 자기결정권의 문제로서 활동가나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면 그들이 당사자이지만, 장애인과 부모의 입장이 충돌할 때는 장애인이 당사자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부모활동가들이 자녀의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직접적 당사자라고 응답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도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당사자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 이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당사자라고 응답하고 있어 부모 등 가족의 장애 경험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부모나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개인이 가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하는 자조운동(people first)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자기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어져 왔다. 지금도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이나 부모들로부터 “그이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요!”라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울거나 소리를 지를 때 반응하며, 그의 행동과 얼굴 표정을 보고 메시지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사자는 말은 할 수 없어도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언어적 의사소통은 힘들지만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의심의 여지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의사소통능력 부족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릴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사회인식과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8) 2007년 전국 장애인교육권연대 부모활동가 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9명(55%)이 장애인 부모가 ‘자녀 이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직접적 당사자라고 응답했고, 13명(37%)이 자녀의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직접적 당사자라고 응답했으며, 3명이 자녀를 대리하는 간접적 당사자라고 응답했다. 발달장애인 부모운동에서 부모들 자신이 당사자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인용, 200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방법을 좀 더 개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키는 일상생활에서, 교육과정에서 늘 소외되어져 왔고, 이후 정보습득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권한까지 박탈해 온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낙인은 그들로 하여금 소통과정에서 소극적이게 만들고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만든 사회의 억압적 과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억압적 이해에 기초한 것에 다른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억압적 이해는 발달장애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대화방법에서도 나타난다. 다양한 시각적 도구, 즉 비디오, 그림, 만화 등을 곁들여서 기억을 자극시키고 이해를 돕는다면 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음(남구현 외, 2005)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전통적인 언어적 방법으로만 소통하려 하는 우리의 좁은 지식세계의 틀 속에 발달장애인이 맞추도록 강요해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진술의 진실성, 감춰진 삶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들이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바라봄으로써 종전의 배제 패러다임에서 참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진우, 2008).

발달장애는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언어상의 기술(linguistic skills), 기억력 등 인지능력,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에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을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하려면 발달장애인의 기억능력을 인지하고 한 번에 제한된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를 피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말로 하는 표현외에 시각적 보조물을 사용, 어떻게 응답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고 분명한 대답을 이끌어 주는 등의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주류사회로부터 의사소통에 있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최근에는 보완적 및 대체적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체의사소통시스템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상징(symbols), 보조물(aids), 전략(strategies)과 기술(techniques)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기술들은 의사소통 보드(boards)나 대화지침서에서 부터 전자 기구, 소형 컴퓨터 등은 미묘한 음성차이를 알려주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 주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래 표에는 장차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자신의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관련 조항들이다. 모든 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며 각 차별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을 요구하거나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자신이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역할 강요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자기결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 정부도 발달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기결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관심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장이나 부모가 필요한 의사결정을 대신하도록 하고 부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족책임으로 남겨두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남겨두었다.

결국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은 그들에 대한 억압적 과거를 반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표 4]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된 장차법 조항 및 그 내용(김진우, 2009)

관계	관련 조항	내 용
일반 원칙	제7조 (자기결정권및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고용), 제14조(교육),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제33조(장애여성)	동 조(條)들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소극적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 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극적	제13조(차별금지)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와 과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장애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큰 정책적 욕구는 무엇일까? 2007년 9월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등 가족 13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지원 욕구 중에서 ①자녀의 자립능력, 직업재활 지원(27.4%), ②부모 사후, 후견인 등 지원제도(25.1%) 등 자립생활 지원과 ③ 치료, 교육 등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23.4%)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④ 활동보조인서비스, ⑤돌보미제도 등 가족지원 제도를 중요하게 선택했다. 장애인이나 가족에 대한 각종 할인이나 혜택은 4.6%,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1.1%를 차지해 우선순위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했다.

[표 5] 서울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지원욕구

장애인 및 가족지원 정책 욕구	우선순위	지원받은 경험
①자녀의 자립능력, 직업재활 지원 프로그램	27.4%	21.0%
②장애인 부모 사후 대책, 후견인 등 지원제도	25.1%	4.3%
③장애자녀 치료, 교육 등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	23.4%	13.8%
④장애자녀 활동보조인서비스	10.9%	31.2%
⑤가족의 휴식 위한 돌보미서비스	7.4%	5.8%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립생활 능력 및 직업재활 지원, 부모사후 지원, 돌보미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는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부모사후 대책 및 후견인 지원, 돌보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4.3%, 5.8%에 불과해, 후견인제도 도입, 돌봄 등 가족지원서비스 등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화 과제가 절실하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욕구는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욕구가 주로 성인기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연령과 비례하지 않는 발달상의 성취가 자립생활의 조건을 제공하고 서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발달과 교육이 이뤄지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지만, 가족의 절대적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기결정 기회를 가져야 할 청소년기부터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학령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환 준비시기인 고등학교 연령기(17세 이상)에서 성인기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가족지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기능에 대한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애주기별로 전

개되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와 실천 영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발달장애인을 위한 수평적 지원과제 중에서 자립생활 지원 외에 소득보장, 건강발달 지원, 가족지원 등은 별도의 제도적인 과제로 구분된다.⁹⁾

[표 6]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영역

자립지원	주요 지원내용	주요 연령기
자 기 관 리 (S e l f Management) 지원	자기보호, 일상생활(ADL)능력, 이동능력, 활동보조 지원	아동청소년기
사회기술(Social skill) 지원	의사소통 능력, 대인기술, 지역 사회이용, 자립기술 등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자기옹호(Self-Advocacy)	자기결정, 자기권리 주장, 자조 집단, 성적 결정권 지원	전 연령기
문화예술, 직업능력, 성인교육 지원	문화예술창작, 여가능력, 성인교육 등 사례관리 지원	전 연령기
주거 지원	자립주거 체험, 공동생활 지원	청년기,장년기
결혼, 육아 지원	결혼생활, 육아지원	청년기,장년기
직업재활, 고용연계 지원	직업능력지원, 고용지원	청년기,장년기

1) 자기관리, 사회기술 능력과 학령기 교육

자립생활 측면에서 장애인 교육은 자기관리(Self Management) 능력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능력을 키워주고,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여 자기결정 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장애인 공교육 측면에서 장애인교육법이 명시한 무상교육, 의무교육 원칙에 따라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과 같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환경(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구축하는 수준의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2) 자기옹호 및 성(性)적 결정권

9) 미국 발달장애인국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종류로는 1)고용 2)교육 및 조기 중재 3) 건강 4)주거서비스 5)이동/교통서비스 6)여가/평생교육서비스 7)리더쉽/권리옹호 지원 6)공식/비공식적 지역사회 지원 7)아동 양육/돌봄을 제시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8)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권익보호(self-advocacy)와 부모 등 가족도 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적 결정능력에 있어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고 관리하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성적 대처능력에서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인 욕구와 권리는 동일하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적절하게 이성 관계를 맺고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예술, 직업능력 등 성인교육 지원

문화예술 창작, 사회활동 능력도 발달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가치를 가진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화폐적 가치를 생산하는 임금노동, 생산노동 만이 직업적 가치라고 보는 것은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자원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은 화폐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더욱 의미있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과제는 특수교육기관 전공과나 특수학급, 복지관 등에서 주로 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진로를 위한 직업탐색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게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무소에서 직업능력평가 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청소년의 직업선택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학령기 이후의 성인기 교육(Adult Education)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제도적 검토(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와 세밀한 실천영역 확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로 지역사회시설 통합이용과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연계 지원이 관건이다.

4) 결혼 및 육아 지원

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성생활 가능성을 부정하고, 결혼과 출산을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사랑과 성에 대한 표현, 결혼에 대한 지속적인 결혼 환경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산후 육아도우미나 출산보조금 등의 실질적인 육아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5) 주거 지원

장애인에게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독립과 지원이 중요하며, 정상화나 사회통합 원칙에 따라 다양한 주거 모형과 이에 따른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세대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주거모형은 그룹홈, 위탁가정이 전부인 것인 양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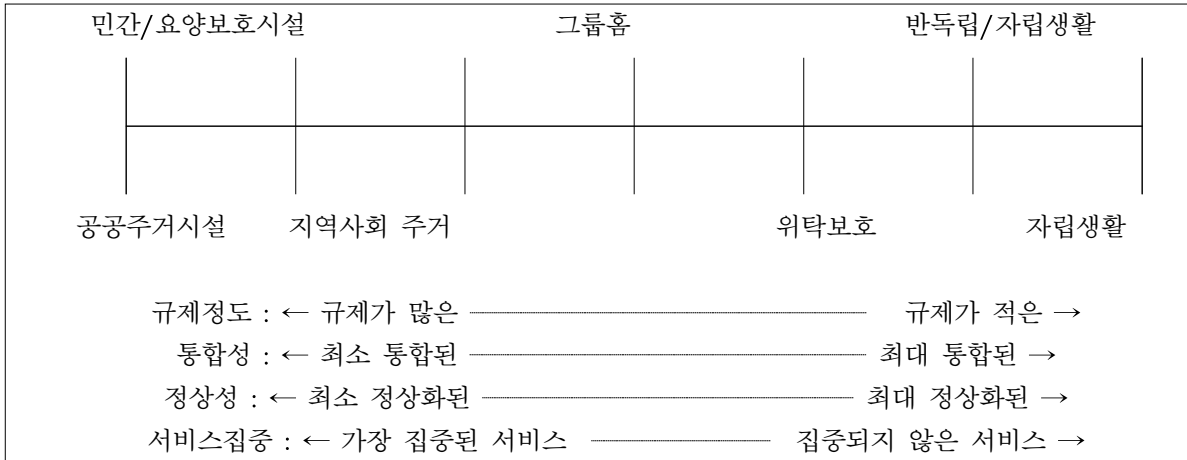
현재 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일환으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이내의 소

규모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그룹홈, 케어홈, 단기케어홈(Respite Care Home) 등 거주홈으로 구분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홈을 지원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설보호주의를 폐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기반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의 생활시설과 다를 바 없으며,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부터 자립생활가정, 체험 홈 등을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달장애인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다양한 주거모형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자립생활 가정 등 즉각적인 주거지원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주거연계 모형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전환(transition)하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김종인, 2004).

[그림 1] 미국 발달장애인의 주거 연계 모형



6) 직업 및 고용연계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은 일반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무지도원(job coach) 등 인적 지원을 통한 현장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지원고용(개별배치 모형, 이동작업대, 소그룹 취업 등) 모형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고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상담과 고용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정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7) 가족역량 지원, 부모 사후 대책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가족역량(empowerment)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래 장애인 가족지원은 가족 기능의 강화와 강점을 살리는 가족중심 실천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Turnbull, 2000).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도 넓은 의미의 자립생활 대상으로 볼 수 있다(김종인, 2004). 예컨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료상담, 자립지원을 위

한 부모역할 훈련, 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의 직업생활 지원 등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미국 재활법에서는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해야 할 핵심서비스로 ① 정보제공과 의뢰 ② 자립생활 기술훈련 ③ 동료상담 ④ 개별적·조직적 권익옹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노섹(Nosek, 1988)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으로 ①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센터의 설립·운영에 장애인 본인이 참여하는 소비자 주도(consumer control) ② 지역사회중심(community based) ③ 비주거(non-residential) 시설 ④ 전 장애영역포괄(cross-disability) ⑤ 민간 비영리(non-profit) 기관 ⑥ 자립생활서비스 제공을 들고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전 장애영역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소외되기 쉬운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도는 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해 존중해야 하며, 부모 등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는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IPP, individual program plan)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개별적인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정종화, 2008).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실천모델,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 모델이 개발되어 뿌리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 행정국(발달장애인국 등)이 조직되었고, 이러한 행정국은 재활법이나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활법에 근거한 자립생활센터(ILC)들은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를 위해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등 필수적인 자립지원 서비스와 주택, 활동보조, 교육 등 다양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 대형시설을 포함한 중간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서비스(Medicaid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 일명 HCBS 웨이버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센터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케어 서비스 외에 개인적 케어, 사례관리, 활동보조, 지원고용, 적응지원 등 자립생활과 관련한 선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HCBS 웨이버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보호를 대체하는 비용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Budde ; 정립희관, 2006).

주지하듯이 어느 국가든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재정지원을 받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에 대해서는 ① 자립생활 가정,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 등 지원 확대 ② 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도입 ③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의한 소득보장 등 보다 장기적이고 커다란 부모운동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제도적, 물리적, 사회 인식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자립생활 지

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규정 외에는 규정된 게 없다. 서울시의 경우 몇몇 자립생활센터들에 대한 사업예산지원이 공모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2009년 24개소에 국비 및 시비 15억원 지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 자립생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복지서비스들이 기관마다 중복되어 분절적으로 전달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직업재활 시설, 생활시설, 사설 교육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부모단체 등에 의해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지원 서비스들이 국가재정, 지자체 재정, 또는 민간 재정에 의해 중복적이면서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비효과적이다(김용득, 2003). 기존의 빈곤 장애인 가족 중심의 잔여적인 지원과 분절된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등에 대한 단편적인 사업예산 지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 가족 중심, 탈시설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모델의 개발과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노력이나 비용은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공통된 현실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첫째,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이고 동시에 이뤄지도록(One-Stop Service) 전달체계를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서방국들 처럼 ‘발달장애인지원국’ 등을 만들어 행정지원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전환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 및 공공 센터의 모델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준하는 핵심 기능과 그 기본 요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과제가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 정책은 15개 시도에 1개씩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¹⁰⁾ 지원에 국한하여 협소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여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뚜렷하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에 준하여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센터 3개소에 불과하고 센터당 예산지원 규모가 3~9천만원(총 1억 7천만원)으로서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적인 지원센터를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사례관리 까지 실천하려면 다수의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10)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복지부가 시도에 1개씩 개소하여 사실상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14개 시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1개 부모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부모교육 이수자 등으로 느슨하고 광역 시도를 사업대상으로 하면서도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쳐 전문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자립지원 센터를 육성하더라도,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원칙에 따라 모든 자립생활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려면,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안정적인 인력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을 규정하고, 민간 자립생활센터나 지원 단체들의 역할을 통합하여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와 몇몇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장애인자립생활조례안에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와 서비스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례안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제정되어 실천되어야 하겠다.

[표 7] 서울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3곳) 현황

지원센터	운영단체	주요사업
서울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상담지원사업 : 부모가족상담, 주택 및 직업알선 ○도우미파견사업 ○권익옹호사업 :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자조집단운영 등 ○ 문화체육 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재)동안사회복지재단	○권익옹호 : 자조모임, 활동가워크숍 ○부모역량강화 교육, 부모 동료상담 ○발달장애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지원 프로그램(문화여가) ○활동보조인 파견
함께가는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부모역량강화 지원(동료상담, 자조모임지원, 자립생활교육,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정체성 교육 ○발달장애인 사회기술, 자립기술 훈련 ○발달장애인 직업체험 지원 ○장애인식 개선사업(소식지, 장애이해강사 파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조례제정 운동

[표 8] 지적장애일자립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진우, 2009)

범주	지원사업	비판적 검토
상담지원	정보제공	o 부모에게만 치우치지 않았는가?
	서비스 이용상담	o 당사자와의 의사소통방식 타당한가?
권익옹호	자기권리주장교육	o 프로그램 구체적인가? 효과성 측정은?
	성교육(성폭력예방)	o 교육교재의 적합성?, 교육내용의 포괄성?
	사회인식개선	o 지적장애인의 정체성 드러내기 - 몸의 신화(Myth of Body) 중심성 탈피
자립생활기술훈련	의사소통기술향상	o AAC 적극개발: 정책과 연계
	금전관리	o 재산후견과 관련, Risk 관리 필요성
	일상생활훈련	o 현장중심의 일상생활훈련
	체험홈 운영	o 탈시설화 유도과 연계 필요
	Image 향상	o 매력있는 자신으로 가꾸기
	역할모델 설정 및 학습	o 끊임없는 동기부여
교육 및 고용지원	장차법 교육	o 차별성립 가능성, 진정절차 교육과 연계
	초등입학 부모지원교육	o 부모 스트레스 완화: 실무현장지원
	직업전환교육	o 경제교육, 직업이해, 예절 등 포괄성
	부모교육	o 부모의 당사자성

2014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남동발간 2014- 09호

■발행일 : 2014년 12월

■발행인 : 서 현 정

1. ■편집인 : 정 은 지

■주 소 : (405-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홈페이지 : www.ndjb.or.kr